

# 목 차

| ♦ 개인신용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5         ◆ 전국 고객지원 센터       6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7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9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13         ◆ 가입자 유의사항       14         ◆ 주요내용 요약서       16         ◆ 보험용어 해설       18 | 9. 유괴납치피해보장 53 10. 심한상해수술비 54 11. 상해흉터복원수술비 56 12.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 56 13.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8 14. 5대골절진단비 59 15. 골절수술비 59 16. 5대골절수술비 60 17. 화상진단비 61 18. 화상수술비 62  |
|--|--|
| 제 1 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19<br>제 2 장 보험료의 납입 등 21<br>제 3 장 보험금의 지급 23<br>제 4 장 계약전 알릴 의무 등 27<br>제 5 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28<br>제 6 장 분쟁조정 등 30  | 20. 깁스치료비 63<br>21.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64<br>22.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65<br>23. 상해수술비【갱신계약】 65<br>24. 일반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66<br>25. 비운전자자동차사고부상보장 68<br>26.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비갱신및갱신계약】 73<br>27. 성장판손상유발교통사고부상보장 74<br>28. 상해성형수술비 75 |
| 상해관련 특별약관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43 2. 비운전자교통상해후유장해 44 3.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46 4. 교육기관생활중상해후유장해 47 5.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49 6. 팔및손가락후유장해 50 7.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51 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비갱신및갱신계약】 53  | 질병관련 특별약관 1. 암진단비(감액없음) 【비갱신 및 갱신계약】   |

| 8   |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비갱신 및 갱신계약】                  | 92  |
|-----|---|-----|
| 9.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비갱신 및 갱신계약】<br>양성뇌종양진단비 | 93  |
| 10. | 양성뇌종양진단비                                  | 94  |
| 11.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95  |
| 12.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96  |
| 13.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 97  |
| 14. | 특정전염병보장                                   | 98  |
| 15. | 피부질환수술비                                   | 99  |
| 16. | 당뇨병수술비                                    | 100 |
| 17. | 시청각질환수술비                                  | 101 |
| 18.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103 |
| 19.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비갱신 및 갱신계약】                  | 104 |
| 20.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105 |
| 21.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 106 |
| 22. | 숭내한새생물량성빈혈신난비                             | 108 |
| 23. |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109 |
| 24.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110 |
| 25.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 111 |
| 26. | 소아백혈병진단비                                  | 112 |
| 27. |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                             | 113 |
| 28. |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 115 |
| 29. | 16대질병수술비                                  | 120 |
| 30. | 14대질병수술비                                  | 122 |
| 31. | 질병수술비【갱신계약】                               | 123 |
| 32. |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 125 |
| 33. | 시력교정비【갱신계약】                               | 126 |
| 34. | 시력치료비 【갱신계약】                              | 127 |
| 35. | 부정교합치료비 【갱신계약】                            | 127 |
| 36. | 영구치상실보장【갱신계약】                             | 128 |
| 37.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비갱신 및 갱신계약】              | 129 |
| 38. |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비갱신 및 갱신계약】 …             | 130 |
| 39. | 성장장애관련 질병입원보장모양모아병개두수술비소아탈장수술비            | 133 |
| 40.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 134 |
| 41. | 소아탈장수술비                                   | 135 |
| 42. | 뇌병변장애진단비                                  | 136 |
|     |   |     |

| 42-1.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   |
|--|
| 상해, 질병 및 기타 특별약관  1. 5대장기이식수술비   |
| 치아치료보장관련 특별약관       1. 영구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       156         2. 유치보존치료보장【갱신계약】       158         3. 치아보철치료보장【갱신계약】       160   |
| 태이관련 특별약관         1. 출생위험보장       164         2. 신생아보장(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일당)       166         3. 선천이상수술비       168         4.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169         5.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170 |
| 부양자관련 특별약관1721. 임신출산질환수술비1732.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733. 모성사망1754. 유산수술비1765. 유산입원일당1776.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179  |

| 7.         |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   | ·18          |
|------------|--|--------------|
| 8.         |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  | ·182         |
| 9.         |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  | ·18⁄         |
|            |  |              |
|            |  |              |
| 실          | 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   |              |
| 1.         | <b>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b><br>실손의료비 【갱신계약】                              | ·18          |
| 2.         | 해외치료입원의료비 【갱신계약】   | .208         |
|            |  |              |
| _          |  |              |
|            | 전자관련 특별약관  |              |
|            |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갱신계약】   |              |
| 2.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22          |
| 3.         | 자동차사고벌금(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22          |
| 4.         |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갱신계약】<br>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갱신계약】                       | .22          |
| 5.         | 운선면허취소보상(영업용)【갱신계약】  | .22          |
|            |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갱신계약]  |              |
| /.         |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갱신계약】                                     | .22          |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갱신계약】  |              |
| 9.         |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 -23          |
|            |  |              |
| TJI        | 도성 특별약관  |              |
| <b>All</b> | 포영 독일적인<br>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 ······                                   | .ეე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   |              |
| ۷.         | 부양자추가 특별약관   | .20          |
| ٥.<br>۱    | 기르기도 하으저주사체보다면 트벼야과  | .23,         |
| 4.<br>5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br>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 ,22l         |
| ٥.<br>۵    | 든저다시마 ㅋㅋㅋ단<br>특정부위및질병부담보 특별약관                                    | 2U<br>129.   |
| 7          | 그 어느 기록 보이 다니 그 보이 보이 하는데 보이 다니 하는데 보이 다니 하는데 보이 하는데 보이 하는데 되었다. | 2U<br>1NC.   |
| ١.         | 구시 조회보험료자동납입추가 특별약관 ······                                       |              |
| ρ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241<br>MC.   |
| о.<br>a    |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   | 241<br>'D/I' |
| ∂.<br>10   | .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 ·······                                     | .2/I         |
|            | . 포용국국 사용용면(II) 국물국단<br>. 실손의료비 보장(적립대체형) 무사고할인 특별약관             |              |
| 1 1        | · ㄹㄴㅋㅛ미 ㅗㅇ(ㄱㅂ네세ㅇ/ ㅜ//ㅗㄹㄴ ㄱㄹㄱㄴ                                    | 4            |

12. 전자서명 특별약관 -----245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 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 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 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 Cł.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 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전화 : 2 1544 0114
-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 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 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 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 전화 : **☎** 1544 0114
- · 인터넷: http://www.lia.co.kr
-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 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전화 : **☎** 1544 0114
  - · 인터넷: http://www.lig.co.kr
- · 서면 : 135-5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EI워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 2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한국신용정보㈜ : **2**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2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 개인신용정보                               | 대한손보협회                                   | 금융감독원                            |
|--------|---|--|----------------------------------|
| 구분<br> | 관리 보호인                                  | 정보보호담당자                                  | 정보보호담당자                          |
| 전화     | (02)6900-2141~2                         | (02)3702-8679                            | (02)3145-7111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br>역삼동 649-11<br>LIG타워<br>준법감시팀 | 서울시 종로구<br>수송동 80<br>코리안리 B/06층<br>기획조사부 | 서울시 영등포구<br>여의도동 97<br>신용정보실(1팀) |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콜센터[☎ 1544-01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객지원 센터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www.lig.co.kr)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가능 ● 대출상담 문의 평일 09:00 ~ 20:00 [토, 일, 공휴일제외] ● 계약조회,변경,해지, 기타상담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 전 국 고 객 지 원 센 터

강북고객지원센터 02) 3149-7000 광주고객지원센터 062) 222-1114 대구고객지원센터 053) 669-7114 대전고객지원센터 042) 259-3000 본사고객지원센터 02) 6900-2552~3.5 부산고객지원센터 051) 600-2141 수원고객지원센터 031) 547-3800

동봉된 증권과 약관 외에도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교부받으 셨나요?

반드시 청약서 부본(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과 영수증을 교부받으셔야 하며 청약서의 내용물 확인하시고 청약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서명 날인 하셔야 합 니다. 만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 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 시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www.lig.co.kr)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보험금 청구 절차 >

- 당사 보험금청구서 양식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사고)내역 기재 및 자필서명을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콜센터(☎ 1544-0114)에 요청하시면 팩 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립니다.

Д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가 당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청구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비 손생보청구대행서비스 동 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Ţ

•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 나. 대표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처를 통해 제출합니다.

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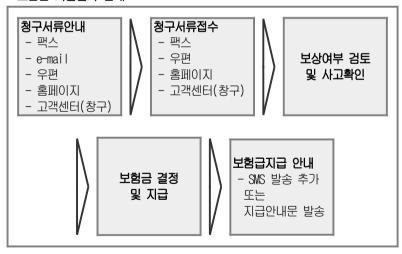
• 보내주신 청구서류에 대하여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고객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 < 서류접수처 >

- 대표팩스 접수 : 대표팩스번호 0505-136-65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팩 스접수증 을 고객님이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 세히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접수: www.lig.co.kr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서류접수를 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파일첨부 (JPG.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 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문시 보험금청 구서(창구보관용)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제출확인증(보험 금청구서 하단)을 절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 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 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 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 LICE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LIG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LIG 손해보험회사 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 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 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 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 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 당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 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LIG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보험사간 치료비,벌금,배상책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책 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 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벌금,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실소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전수 대행

- 2009.10.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 이 신설 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 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은 회 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 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회사간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계약자 동의가 필요 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활 용 동의를 한 청구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 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LIG소해보험회사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 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재심사 청구

- LIG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소해보험회사 민원담당부서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 LICt.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LIG.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고객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 1544-0114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각종 병원 의무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사고

## ○ 공통 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당사 양식 |
| <br>  공 통 |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     |
| 0 0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_     |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_     |

## ○ 의료비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입원  | <ul> <li>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li> <li>진료비영수증</li> <li>진료비 세부내역서<br/>(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li> <li>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li> <li>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추가</li> </ul> | 진료병원 |
| 통원  | <ul> <li>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챠트</li> <li>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li> <li>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li> <li>초진기록지 (계약 후 3개월 이내 사고인 경우 필수, 단 담당자가 필요시별도 요청 가능)</li> <li>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추가</li> </ul>  | 진료병원 |

## ○ 진단금

| ` |                       |  |      |  |
|---|-----------------------|--|------|--|
|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암<br>(제자리암)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br>• 조직검사 결과지<br>• 암수술급여금:수술기록지  | 진료병원 |  |
|   | 두번째암॥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수술기록지 ※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여부 를 확인시에는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지와 "수술기록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 와 "수술 기록지"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료병원 |  |
|   | 2대질병<br>치료비<br>(뇌/심장) | • 진단서<br>• 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 진료병원 |  |
|   | 특정질병<br>수술비           | • 진단서<br>• 수술확인서   | 진료병원 |  |
|   | 기타진단금                 |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료병원 |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사망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ul> <li>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li> <li>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제적등본 (필요시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li> <li>위임장 및 인감증명서</li> <li>통장사본</li> </ul> | 진료병원<br>동사무소 |

○ 신생아보장담보(저체중아육아비용/신생아입원일당)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신생아  | • 출생증명서                        | _   |
| 보장담보 | • 입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 _   |

# ○ 태아보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태아보험 |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br>조기 출생한 경우 | -   |

# 2. 상해사고

# ○ 공통 서류

| 구   |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당사 양식 |
| ᅵᅟᇐ |   |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_     |
| °   |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_     |
|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_     |

## ○ 사고증빙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산재사고 | 산재요양신청서(서28호)     산재요양급여 확인원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보험급여 원부     입퇴원확인서(30일 이상 입원시) |      |
| 폭행사고 | 폭행사고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
| 기타사고 | • 청구서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작성<br>• 초진기록지   | 진료병원 |

## ○ 의료비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입원  | <ul> <li>진단서(20만원 미만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가능)</li> <li>진료비영수증</li> <li>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li> <li>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li> </ul>       | 진료병원 |
| 통원  | <ul> <li>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li> <li>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필수)</li> <li>* 카드 결재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li> <li>초음파,MRI,CT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li> </ul> | 진료병원 |

# ○ 사망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ul> <li>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li> <li>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제적등본(필요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li> <li>위임장 및 인감증명서</li> <li>통장사본</li> </ul> | 진료병원<br>동사무소 |

# ○ 후유장해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ul><li>후유장해 진단서</li><li>※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li></ul>                              | 대학(종합)<br>병원 |
| 후유장해 | <ul><li>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li><li>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li><li> 비장적출 수술건</li></ul> | 진료병원         |
|      | • X-RAY,CT,MRI 필름 및 판독지  | 진료병원         |

# ○ 기타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골절/화상                 | <ul> <li>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br/>(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li> <li>수술시: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li> </ul> | 진료병원        |  |
| 응급비용                  | • 119구급(응급)이송확인서   | 관할 소방서      |  |
| 학원폭력/<br>강력범죄<br>피해보장 |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br>• 진단서  | 경찰서<br>진료병원 |  |
| 상해흉터<br>복원수술비         | • 진단서<br>•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예 확인 필요)  | 진료병원        |  |

## 3. 교통사고

## ○ 공통 서류

| 구 분 | <u>!</u>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당사 양식 |
| 공 통 |          | • 피보험자의 신분증(미성년자 생략가능) | _     |
|     | 5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_     |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자동차보험<br>처리                           |  |             |  |  |
| 자동차보험<br>미처리                          | <ul> <li>교통사고 사실확인원</li> <li>입(통)원확인서(진단명 필수기재)</li> <li>진료비영수증</li> <li>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li> <li>경찰서 미신고시 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기록지)</li> </ul> | 경찰서<br>진료병원 |  |  |

## ○ 사망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ul> <li>교통사고 사실확인원</li> <li>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li> <li>피보험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제적등본(필요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li> <li>위임장 및 인감증명서</li> <li>통장사본</li> </ul> | 경찰서<br>진료병원<br>동사무소 |

## ○ 후유장해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 • 후유장해 진단서   | 대학(종합) |
|      |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
| 후유장해 | <ul><li>※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li><li>- 사지절단, 인공관절 치환수술건,</li></ul> | 진료병원   |
|      | 비장적출 수술건   |        |
|      | • X <del>-R</del> AY,CT,MRI 필름 및 판독지                                     | 진료병원   |

## 이 기타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운전면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 정지보장           |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 법원    |
| 9/179          | • 운전경력 증명서                   | 면허시험장 |
| 운전면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 군선건이<br>  취소보장 | •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 법원    |
| HIIIO          | • 운전경력 증명서                   | 면허시험장 |
| 자동차사고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 벌금             | • 약식명령서                      | 법원    |
|                | • 벌금영수증                      |       |
| 교통사고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 처리보장           | • 피해자 진단서                    | 경찰서   |
| (중상해           |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법원    |
| 포함)            | • 공소장                        | 82    |
|                |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       |
| 자동차사고          |                              | 경찰서   |
| 변호사선임          | •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  | 법원    |
| 비용             | 계산서 등)                       | 82    |

## 4.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31조(보험금의 지급) 5항에 의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는 제2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31조(보험금의 지급) 2항 및 3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31조(보험금의 지급) 4항에 의거 규정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3.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6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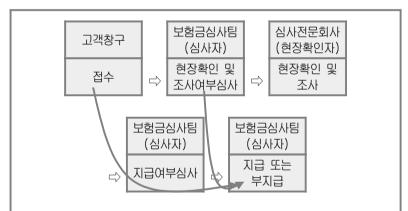
• 표준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 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5. 주요 안내 내용

- 1.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2.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L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www.LIG.co.kr)
- 3.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제지급금 등) 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

- 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급금,각종안내,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 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4.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5. LIG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LIG손해보험 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표전화: 1544-0114)

#### 6.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 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 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 7                        | <sup>1</sup> 분  | 적립기간                                     |                                    | 적립이율                                |  |
|--------------------------|---|--|------------------------------------|-------------------------------------|--|
| 승낙거절로 자                  | 네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단                                 | 예정이율 + 1%<br>(단, 신용카드<br>매출은 이자 없음) |  |
| 청약 철회로 2                 | 납입보험료 반환  | 반환기일 <sup>쥐)</sup><br>다음날부터<br>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단, 신용카드<br>매출은 이자 없음) |                                     |  |
| 계약 취소로 기                 |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보험.                                | 계약대출01율                             |  |
| 계약 무효로<br>기납입보험료 반환      | 회사의 고의/과실로<br>계약무효 또는 회사가<br>승낙 전에 무효를<br>알았으나 보험료를<br>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br>다음날부터<br>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                                 | 계약대출이율                              |  |
| 보통약관 및<br>특별약관<br>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 <sup>주인</sup> 이내에<br>보험금을 지급하지<br>아니한 경우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                          | 회사가 환급금의<br>지급시기 7일 이전에   |  | 1년<br>이내                           | 예정이율 <sup>주3)</sup><br>의 50%        |  |
|                          | 지급사유와<br>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 1년<br>초과                           | 1%                                  |  |
| 만기환급금                    | 회사가 환급금의<br>지급시기 7일 이전에<br>지급사유와<br>지급금액을 알리지<br>아니한 경우           | 환급금 청구일까지의<br>기간                         | 예정이율 <sup>주3)</sup>                |                                     |  |
|                          | 환 <del>급금</del> 을 청구한<br>지급기일까                                    |  | 예정(                                | 기율 <sup>주3)</sup> + 1%              |  |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 구 분   |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일01월     |                              |                       |
|-------|---|------------------------------------|---------------------------|--------------------------|----------|------------------------------|-----------------------|
|       | 회사가 혼   |                                    |                           | 보험<br>만기일                |          | 예정이율 <sup>주3)</sup>          |                       |
|       | 지급시기 7일<br>지급사유와 2  |                                    | 지급시유가 발생한                 | 보험<br>기간                 | 1년<br>이내 | 예정이율 <sup>주3)</sup><br>의 50% |                       |
|       | 알린 :  | 경우                                 | 날의 다음날부터<br>환급금           | 만기<br>이후                 | 1년<br>초과 | 1%                           |                       |
| 중도환급금 | 중도환급금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시유와 지급금액을 알디지 아니한 경우 환급금을 청구한 일 지급기일까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                                    | 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sup>주3)</sup>      |          |                              |                       |
|       |   |                                    |                           |                          | 0:       | 정이;                          | 물 <sup>주3)</sup> + 1% |
|       |   |                                    | 지급일까지의 기간                 | Į.                       | 코험계약     | 약대출01율                       |                       |
|       | 1   |                                    | 지급시유가 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 환급금 |                          | 매        | 예정이율 <sup>주3)</sup><br>의 50% |                       |
| 해지환급금 |   | 청구염                                | 일까지의 기간                   | 1년:                      | 조과       | 1%                           |                       |
|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br>다음날부터<br>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 예정이율 <sup>주3)</sup> + 1% |          |                              |                       |
|       |   |                                    | 일의 다음날부터<br>일까지의 기간       | <u>t</u>                 | 코험계약     | 역1출0월                        |                       |

- ※ 지급이지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1)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 주2)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횐급금 : 청구일부터 3영업일
- 주3)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적립이율은 "예정이율"을 "공시이율"로 적용 합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 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인 경우 는 부활일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매보장의 경우 보장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설명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갱신형 보장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간병 관련 보장

- '활동불능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

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180일이 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고 180 일이상 CDR척도 3점이상의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 CI 관련 보장

- CL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 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교통상해 관련 담보

-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 일'로 하며,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과 해당 법률상 관공서의 공 휴일로 합니다.
- '운전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에서 말하는 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어린이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해당 계 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태아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단. 계약자 요청시 다른 출생자를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관련 당보

-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 형, 질병통원형, 종합(상해와 질병을 말합니다)입원형, 종합통원형 등 총 6 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6개 담보종목 중 한 가 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당!         | 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
|            | 입원        |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    |  |  |
| <br>  상해   |           |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 <u>800</u> | 통원        |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 |  |  |
|            | 0         | 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            | 입원        |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  |  |
| <br>  질병   | <u> </u>  |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 20         | _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                                    |  |  |
|            | <u>통원</u> |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            | 0101      |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  |
|            | <u>입원</u> | <u>병원</u> 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 종합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  |
|            | <u>통원</u> | <u>병원</u> 에 <u>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            |  |  |
|            |           | 에 보상  |  |  |

## ○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 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 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은 제외, 통신판매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자 청약한 경우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7. 해지 계약의 부활(증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중도인출

보장개시일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중 약관에서 정 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보험년도 기준)로 제한됩니다.

### 9. 계약전 · 후 알릴 의무

- 1)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 서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 로 대체합니다.)
- 2)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 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

서야 합니다.

### 10. 보험금의 지급(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 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 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드립니다.

### 11. 보험금의 지급(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 헉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12.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 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O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

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O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통약관

### 제 1 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조(계약의 성립)

-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OL 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2] 회사는 피부험자(부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 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CŁ.
-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 ┃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 『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 |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 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오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윱(이하 『보험계 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 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 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 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 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 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중도인출액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Cł.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 3.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 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 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 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 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LICt.

- 1. 부험종목
- 2. 부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 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 |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 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2]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 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 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당시 보장부분 책임준비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적립한 금액에서 대체 납입되 는 특별약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또는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리 금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 |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 |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8조(보험나이 등)

- []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 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1년 10월 1일 <del>></del> 계약해당일: 10월 1일

### 제 2장 보험료의 납입 등

##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의 보험료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에 필 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 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 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 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 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9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 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 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 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 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

니다.

-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 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3조(계약전알릴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는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 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 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3장 보험금의 지급

##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 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 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2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Cł.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LICt.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 [원·치교병원·한방병원·유양병원·의원·치교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 로 나누어집니다.

##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 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 액(적립한 금액에서 대체 납입되는 특별약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또는 중도인 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 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 험기간 중에 공사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 을 적용합니다.

- 1. 이 보험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2.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 일부터 적용합니다
- 3.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6:4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 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 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 에서 정합니다.
  -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0.6 + 외부지표금리 ×0.4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 차감하 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 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운용자산 (2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100 수익률(%) (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전월말 현재운용자산)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2 ×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100 (직전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전월말 현재운용자산)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합니다.

나.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3년만 기) 수익률 .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 . . 「회사채 수익률 . . 「통 화안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 CŁ.

 외부지표금리 수익률(%)
 = A1 ×0.3 + A2 ×0.3 + A3 ×0.3 + A4 ×0.1

>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산술평균이율 A2: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산술평균이율

A3: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산술평균이율

A4: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산술평균이율

- 주) 1. 국고채(3년만기)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2. 국고채(5년만기)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3. 회사채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AA-)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4.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 (1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 5. 각각의 이율은 과거로 기산하여 직전 4월의 16일부터 전월의 15일까지의 매일 공시하는 이율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보험상품군별 공사이율의 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 5. 세부적인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부리됩니다.

## 제19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이 지난 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경과기간        | 이 율            |
|-------------|----------------|
| 1년미만        | 이 보험의 공시이율×80% |
| 1년이상 ~ 2년미만 | 이 보험의 공시이율×90% |
| 2년이상        | 이 보험의 공시이율     |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 1.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공시이율 ×80%" 적용
- 2.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 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공시이율 ×90%" 적용
- 3.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 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공시이율" 적용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 다.

## 제20조(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적립한 금액에서 대체 납입되는 특별약관 보험료와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원리금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료 납입기간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중도인출을 한번도 하지 않았을 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합 니다.

#### < 보험년도 >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 도 기준 매1년은 당해연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입니다.

####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 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제4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 검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 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작각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 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 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 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 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5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7]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 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 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 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 제28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 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니다
-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 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 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29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 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제30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 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 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제33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 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 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5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5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제34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 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 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 + 1%를, 그 지급기일 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 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리연동형의 경우 "예정이율"을 "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 제35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제37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장 분쟁조정 등

###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 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

#### 장해분류표

#### 총 칙

###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 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 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

- 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 1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하   | 10     |
| 를 남긴 때                             |        |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님 | 5      |
| 긴 때                                |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하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 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 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 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 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 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 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 45     |
| 를 남긴 때                              |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 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 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 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1)『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 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 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 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 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ㅈ, ㅊ)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ı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인하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 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 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으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뻐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3)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뻐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 을 때
-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뻐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뻐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 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 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

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
  - 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 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 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 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 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하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 다.
-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 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

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 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 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 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 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 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 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 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 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 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 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 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 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
-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 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1. 발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20     |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8      |
|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 3      |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

### 나. 장해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 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 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 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유도협착으로 인공유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 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  | 100    |
| 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   | 70     |
| 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     |        |
| 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 40     |
|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 5) 극심한 치매 : COR 척도 5점              | 100    |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
- 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
- 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에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 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 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①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 층촬영(CT),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 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 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 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간병)와 행동감시를 위 한 개호(간병)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 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

- 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가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 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 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 하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 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 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 암〉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br>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br>-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br>태(30%)<br>-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br>한 상태(20%)<br>-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br>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br>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  |
| 음식물<br>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br>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br>-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br>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br>-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br>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br>-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br>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  |
| 배변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  |

|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br>상태(10%)<br>-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br>-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
| 옷입고<br>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br>상태(10%)<br>-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br>착용할 수 있는 상태(5%)<br>-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br>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br>(3%) |  |

-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 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특별약관

#### 상해관려 특별약관

#### 1.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대상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이 특별약관의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20년간 |
| 보험가입금액 5% 해당액 | 확정지급(20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2011년 10월 1일 ⇒ 사고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사고발생일: 2012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반상해80%이상후 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일 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일 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일반상

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0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2. 비운전자교통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서 비운전중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Box$
-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 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 종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하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3. 대중교통이용중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 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 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 1 여객수송용 항공기
-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레 트카 제인)
- 5. 여객수송용 선박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Cł.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2] 제1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Γŀ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한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4. 교육기관생활중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를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 제51조에서 정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및 동법 제52조에서 정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일(토요일을 포함)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 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교육기관의 수업일(토요일을 포함)에 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교육기관의 수업일이라 함은 연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7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정한 관공 서의 공휴일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7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정한 관할 청 또는 학칙에서 정하는 여름, 겨울, 학기말의 휴가 및 개교기념일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7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정한 비상 재해 등으로 인한 임시휴업일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3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 [2]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 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LICt.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 2.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업일에 부모 또는 친권 자.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생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5.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스포츠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 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스포츠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서 스포츠활동중상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 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 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 1.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 2. 등산, 스키, 하키, 마술(馬術),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 3.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 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Γŀ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니다
-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한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6. 팔및손가락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로 어깨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분류표(【별표】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유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7.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 승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 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서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중이거나, 운전중인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 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항 제3호에서 정한 원동 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 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 4 제2항에서 "자전거 운전중"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 운 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항을 적용합니다.
-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Γŀ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LICt.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9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 2.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 여 운행중인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상해
-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 4.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위한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 II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해입원일당 11의 지 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히 이상 입원하 경우 이를 1히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4] 피부형자(부형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한니다
- [5]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9. 유괴납치피해보장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 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에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 일당 10만원을 유괴납치피해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억류상태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 2.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아래 옮겨 두는 것
- 3. 제1호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에서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 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10. 심한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별표] (신경 및 장기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신 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 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심한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심한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두종류 이상의 심한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심 한상해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신경 및 장기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신경 및 장기손상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       |
|-----------|---------------------------------------|-------|
| 1.        | 뇌신경의 손상                               | S04   |
| 2.        | 두개내손상                                 | S06   |
| 3.        |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14   |
| 4.        | 흉곽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24   |
| 5.        | 심장의 손상                                | S26   |
| 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 S27   |
| 7.        | 흉곽의 으깸손상 및 흉곽부분의 외상성 절단               | S28   |
| 8.        |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 S34   |
| 9.        | 복강내 기관의 손상                            | S36   |
| 10.       |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 S37   |
| 11.       |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 S44   |
| 12.       |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 S54   |
| 13.       | 손목 및 손부위의 신경의 손상                      | S64   |
| 14.       | 둔부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 S74   |
| 15.       | 아래다리 부분의 신경손상                         | S84   |
| 16.       | 발목 및 발부위의 신경의 손상                      | S94   |
| 17.       | 기타 여러 신체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T06.1 |
| 18.       | 여러 신체부위의 신경의 손상                       | T06.2 |
| 19.       | 복부내 및 골반기관을 포함한 흉곽내 기관의 손상            | T06.5 |
| 20.       |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 T09.3 |
| 21.       |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추 신경뿌리 및 척추 신경총의<br>손상 | T09.4 |
| 22.       |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 T11.3 |
| 23.       |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 T13.3 |
| 24.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신경손상                      | T14.4 |
| 25.       | 절단 잘린 끝의 신경종                          | T87.3 |
| 26.       | 척수 손상의 후유증                            | T91.3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11.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 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 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발생시점에 만15세 미만일 경우 부득이 사고일 로부터 2년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7만원 고정)

|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
| 지급금액 | 수술 1㎝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br>(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 로 항
- 2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은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 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 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1. 안면부라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牛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친구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12.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별표] (탈구,관절및인접근육의염좌및과긴장분류표)] 에 정한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 적인 결과로 의료법 제3조 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일초과 1일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의 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사고에 의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한니다

4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 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을 계 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탈구,염좌및과긴장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위한니다

# [별표]

##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은 제6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 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03   |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13   |
|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23   |
| 흉곽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S29.0 |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33   |
|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43   |
|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53   |
|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63   |
| 둔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73   |
|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S76.1 |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83   |
| 아킬레스건의 손상                                 | S86.0 |
|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93   |
| 여러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   |
|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T09.2 |
|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br>및 긴장  | T11.2 |
|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br>및 긴장 | T13.2 |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T14.3 |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T14.6 |
| 외상성 근육허혈                                  | T79.6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13.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Ⅱ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골절분류표11)에서 정한 골절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 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골절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상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한니다

# [별표]

#### 골절분류표 11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 (치아의 파절 제외)          | (S02.5는 제외) |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 4. 목의 골절             | S12         |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골절    | S22         |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 T02         |
| 14. 상세불명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 15. 상세불명 팔 부위의 골절    | T10         |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14.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I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5대골절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 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5대골절분류표

약과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 2. 목의 골절             | S12         |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S22.1 |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15.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골절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 고로 인하여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牛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 4. 목의 골절             | S12   |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16.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별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5대골절수술비는 애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인하여 두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 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한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5대골절분류표) -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별표와 동일

# 17.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 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화상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 T20  |
| 상)  | T0.1 |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1  |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2  |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3  |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화상 및 부식<br>(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4  |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5  |
|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6  |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7  |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8  |
| 10.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9  |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br>피부 손상)           | T30  |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 에 의한 피부 손상)        | T32  |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18.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화상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 고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류법 제54조(신의류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화상분류표) -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별표와 동일

## 19. 폭력피해보장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의 일상생활 중 제 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은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을 폭력피해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관할경찰 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한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 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0.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by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깁스 (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 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김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김스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깁스(Cast)치료의 정의: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 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함, 단, 부목(So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o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Cł.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1.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 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 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제3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화상및 부식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 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 다. 다만,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 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2]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 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 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한니다

#### 22.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만 12세 이하 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하 「스쿨존」이라 함)내에서 아래의 교통사고(이하 「교통사 고 라 함)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은 경우. 1사고당 보 험가입금액을 스쿨존 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이하 같 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함 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하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 2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를 말하 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 합니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니다.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3. 상해수술비【갱신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상해수술비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상해 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아니합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친구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24. 일반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갱신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 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 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Cł.
-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Γŀ
- 4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 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함 LICt.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25. 비운전자자동차사고부상보장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 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부상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 1급       | 부상등급                      | 600만원   |
| 2 ~ 3급   | 보험가입금액300만원기준             | 300만원   |
| 4급       |                           | 300만원   |
| 5급       | 부상등급II<br>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150만원   |
| 6급       |                           | 80만원    |
| 7급       |                           | 40만원    |
| 8 ~ 11급  |                           | 20만원    |
| 12 ~ 14급 |                           | 10만원    |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 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3.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1급       | <ol> <li>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li> <li>척추체 분쇄성 골절</li> <li>착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li> <li>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li> <li>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li> <li>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li> <li>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li> <li>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li> <li>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li> <li>형과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li> <li>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li> <li>상막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li> <li>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ol> |
| 2급       | <ol> <li>상박골 분쇄성 골절</li> <li>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li> <li>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2급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3급       | <ul> <li>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li> <li>15. 경추궁의 선상 골절</li> <li>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li> <li>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li> <li>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
| 4급       |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 외측부 인대, 전 후십자 인대, 내 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 비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5급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 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 좌골 장골 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6급       | 6. 치골 상 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권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8급       |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 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br>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br>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 종골은 제외한다)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
| 9급       |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 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10급      | 1.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11급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br>2. 손가락 골절 탈구 및 염좌<br>3. 비골(코) 골절<br>4. 손가락뼈 골절<br>5. 발가락뼈 골절<br>6. 뇌진탕<br>7. 고막 파열<br>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br>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12급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br>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br>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3급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br>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br>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4급      | 1. 3일 이하의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br>2. 7일 이하의 통원을 필요로 하는 상해<br>3.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비고       | <ol> <li>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li> <li>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li> <li>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li> <li>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해 등급별 해당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li> </ol> |

## 26.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과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 도로 합니다

- 2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 (【별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 입원한 경 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4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 중환 자실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 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지급 하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 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인한니다

#### [별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이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 제곱미터 이 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하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 도 기록기.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 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 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 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7. 성장판손상유발교통사고부상보장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20세이하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서 정한 [별표] (자동차사고 특수골절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 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한니다

#### [별표]

#### 자동차사고 특수골절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
|  |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  |  |
| <br>  <sub>6급</sub>                          |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  |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  |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  |  |
|  |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  |
| 7급 족과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
|  |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  |
|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br>하지 아니한 상해 |  |  |  |
| 8급   |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  |  |
|  |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 9급   | 요골 골두골 골절                                  |  |  |

# 28. 상해성형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발생시점에 만15세 미만일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최대수술 길이에 따라 상해성형수술비(안면부)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분                 | 상해성형수술비    |
|--------------------|------------|
| 안면부(5cm이상~ 10cm미만) | 가입금액의 60%  |
| 안면부(10cm이상)        | 가입금액의 100% |

- ②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 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최대 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피부이식수술)등의 경우에는 반흔(흉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측정한 최대 직선길이로 합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기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이 특별약과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 제2조(계약의 소멸)

[]]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비 중 『암』으로 인한 진단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되며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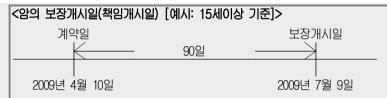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 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 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각각 1 히의 지단확정에 하합니다)에는 치초 1히의 지단에 하하여 아래에 정하 금액 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 암 진단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
| 기타피부암 진단비 |                            |  |
| 제자리암 진단비  | ]<br>-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
| 경계성종양 진단비 | ) 이 특별확진의 모임가입음적 20%  <br> |  |
| 갑상선암 진단비  |                            |  |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위에서 정한 암진단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 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부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 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6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제자리 신생물 분류 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1】

#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 LICŁ.

|           | 분류번호                          |         |
|-----------|-------------------------------|---------|
| 1) 2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 2) $\leq$ | 노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 3) 🕏      |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 4) 11     | #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 5) I      | II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 6) 3      | 5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 7) 9      | ?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 8) 0      | rk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 9) 2      | rk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 10) £     |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 11) b     | E,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 12) 2     | L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 13) 불     | 물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 14) ह     | 님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 15) =     |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 16) 전     |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 17) 글     | 글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 18) 🗄     | 반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 19) 는     | 르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 D47.3   |
| 20) 글     | 글수섬유증                         | D47.4   |
| 21) 🖯     | 난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O(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 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별표2】

##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 4) 제자리 흑색종                | D03  |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별표3]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 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 D38   |
| 의 신생물                                |       |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    | D43   |
| 물                                    |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병증                     | D47.2 |
|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 | D47.7 |
| 는 미상의 신생물                            |       |
|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 | D47.9 |
| 세불명의 신생물                             |       |
|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 D48   |
| 생물                                   |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2.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항의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조(계약의 소멸)

- 1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발성소아암진단비 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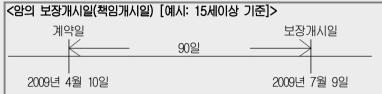
##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다발성소아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 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다발성소아암진단비(감액없음)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

은 출생일로 합니다.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 [약관"()] 부가된 계약의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6조(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발성소아암』이라 함은 【별표】다발성소아암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뇌의악성신생물(암)』,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호지킨 림프종』, 『소포성림프종』, 『비소포성림프종』, 『성숙 T/NK-세포림프 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성 백혈병』, 『골 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 명의 악성신생물(암)』. 『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77~(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 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 다발성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피부험자(부험대상자)가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다발성소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발성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 C70         |
| 2. 뇌의 악성신생물(암)                      | C71         |
| 3.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C72         |
| (암)                                 |             |
| 4. 호지킨림프종                           | C81         |
| 5. 소포성 림프종                          | 082         |
| 6. 비소포성 림프종                         | 083         |
| 7. 성숙 T/NK-세포림프종                    | 084         |
| 8.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b>C8</b> 5 |
| 9. 림프성 백혈병                          | C91         |
| 10. 골수성 백혈병                         | C92         |
| 11.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12.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b>C9</b> 5 |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 | C96         |
| 물(암)                                |             |
| 15.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 16.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 |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O(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O|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 |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3.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 제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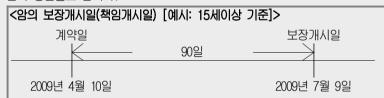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각각 3일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 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br>경계성종양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 양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 니다. 이 경우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 너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 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 「약관"OI 부가된 계약의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 4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5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입원일당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 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6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 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입원비는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 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 Cł.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 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6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 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2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2】(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

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함

# 4. 암수술비 | 특별약관【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요) 제2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 제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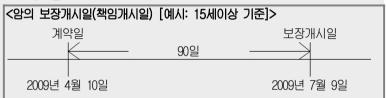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 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수술비 I 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암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br>경계성종양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0% |

-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 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 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 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 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6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2】(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별표2】(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함

#### 5. 암수술비 |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 제2조(계약의 소멸)

[]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수술비Ⅱ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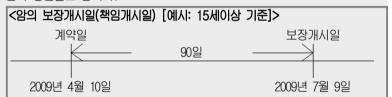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의 암수 술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미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80% |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Ⅱ) 특별약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 과의 갱신일로 합니다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 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Cł.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6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 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A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 분류번호 (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함
- 6.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항의 고액치료비암 II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하 암보장개 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Ⅱ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2조(계약의 소멸)

[1]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 II 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Γŀ

##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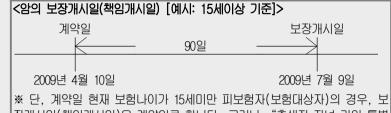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감액없음)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 관의 갱신일로 합니다.



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 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6조(고액치료비암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II』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 11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고액치료비암 Ⅱ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EH.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고액치료비암 1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암)

쓸개(담당)의 악성신생물(암),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부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고액치료비암 II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액치료비암 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

####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 I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C15     |
| 2)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 C25     |
| 3)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 -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     |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1     |
|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0~C72 |
|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 C70     |
| - 뇌의 악성신생물(암)                         | C71     |
|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72     |
|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 - 호지킨림프종                              | C81     |
| - 소포성 림프종                             | C82     |
| -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 - 성숙 T/NK-세포림프종                       | C84     |
|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C85     |
| -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 - 악성 면역증식질환                           | C88     |
|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C90     |
| - 림프성 백혈병                             | C91     |
| - 골수성 백혈병                             | C92     |
| -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 C96     |
| -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 C22     |
| 7)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 C23     |
| 8)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24     |
| 9)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3     |
|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 C34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7.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가 지급 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다 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뇌졸중진단비 (감액없음)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경우 뇌졸중진단비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 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2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 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별표]

####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지주막하 출혈                     | 160  |
| 2) 뇌내출혈                        | 1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162  |
| 4) 뇌경색증                        | 163  |
|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165  |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166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 8. 뇌출혈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가 지급 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다 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뇌출혈진단비 (감액없음)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경우 뇌출혈진단비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 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 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 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별표]

####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지주막하 출혈        | 160  |
| 2) 뇌내출혈           | 1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16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 색증(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급성심근 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 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별표】(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 Γŀ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 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 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1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별표]

##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 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급성심근경색증               | 121  |
| 2) 이차성 심근경색증             | 122  |
| 3)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 123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10.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Γŀ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다 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 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양성뇌종양진단비로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Cł.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T]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2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 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에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 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난종양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 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 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11.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 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다 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말기신부전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Cł.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의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 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말기신장병(제6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 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 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 장에서 제외합니다.

[2]『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Cł.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12.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수술 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 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맹장 염)(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수술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충수염(맹장염)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충수염(맹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T] 이 특별약관의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충수염(맹장염)』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충수염(맹장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2] 『충수염(맹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Γŀ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충수염(맹장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 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충수의 질환    | K35~K3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Γŀ

#### 13.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식중독으로 진단확정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3일초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입 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식중독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 LIL

③ 같은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 도 식중독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식중독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 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4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식중독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 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중독입원일당 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식중독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한니다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식중독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 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식중독 분류표)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식중독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한니다

## [별표]

#### 식중독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 LICE.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 2. 시겔라증                     | A03  |
| 3. 기타 세균성 장 감염              | A04  |
|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 A05  |
| 5. 아메바증                     | A06  |
| 6. 기타 원충성 장 질환              | A07  |
|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       | A08  |
|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독작용         | T61  |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작용    | T6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14. 특정전염병보장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특정 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 받아 치 료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특정전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콜레라              | A00         |
| 장티푸스             | A01.0       |
| 파라티푸스            | A01.1~A01.4 |
|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 A03.9       |
|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 A04.3       |
| 페스트              | A20         |
| 파상풍              | A33~A35     |
| 티프테리아            | A36         |
| 백일해              | A37         |
| 급성 회색질척수염        | A80         |
| 일본뇌염             | A83.0       |
| 홍역               | B05         |
| 풍진               | B06         |
| <b>볼</b> 거리      | B26         |
| 탄저병              | A22         |
| <u></u> 브루셀라병    | A23         |
| 레토스피라병           | A27         |
| 성홍열              | A38         |
| 수막구균 수막염         | A39.0       |
|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 A41.5       |
| 재향군인병            | A48.1~A48.2 |
| 발진티푸스            | A75         |
| 광견병(공수병)         | A82         |
|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 A98.5       |
| 말라리아             | B50~B54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Γŀ

## 15. 피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피부질 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피부질환』(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피부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T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피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의 『피부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피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피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피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피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피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 L00~L08 |
| 2. 수포성 장애                | L10~L14 |
| 3. 피부염 및 습진              | L20~L30 |
| 4. 구진비늘 장애               | L40~L45 |
| 5. 두드러기 및 홍반             | L50~L54 |
| 6.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 L55~L59 |
| 7. 피부 부속물의 장애            | L60~L75 |
| 8.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80~L9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6. 당뇨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당뇨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당뇨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1] 이 특별약관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당뇨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2]『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친구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당뇨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 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당뇨병       | E10~E14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17. 시청각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시청각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시청각질환』(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 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청각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시청각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시청각질환』이라 함은 【별표】(시청각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시청각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시청각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시청각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눈꺼플,눈물기관 및 안와의 장애     | H00~H06 |
| 2. 결막의 장애                | H10~H13 |
| 3.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H15~H22 |
| 4. 수정체의 장애               | H25~H28 |
| 5.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H30~H36 |
| 6. 녹내장                   | H40~H42 |
| 7.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 H43~H45 |
| 8. 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 H46~H48 |
| 9.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 H49~H52 |
| 10. 시각 장애 및 실명           | H53~H54 |
| 11.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 H55~H59 |
| 12. 외이의 질환               | H60~H62 |
| 13. 중이 및 유돌의 질환          | H65~H75 |
| 14. 내이의 질환               | H80~H83 |
| 15. 귀의 기타 장애             | H90~H95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18.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호흡기 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호흡기관련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호흡기관련질병 수술 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호흡기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호흡기관련질병』이라 함은 【별표】(호흡기관련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2] 『호흡기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Cł.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호흡기관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2899.                     |          |
|---------------------------|----------|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1. 급성상기도감염                | J00~J06  |
| 2.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 J39.9    |
| 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 4.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 J41      |
| 5.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J42      |
| 6. 천식, 천식지속 상태            | J45, J46 |
| 7. 폐렴                     | J12~J18  |
| 8. 재향군인병                  | A48.1    |
| 9.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9.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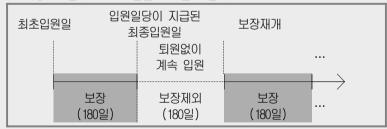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③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LICE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한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아니합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20.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 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 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자가(autolog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 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투여하 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감액없음)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4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5항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 제2조(계약의 소멸)

1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으로 인한 항암방사 선약물치료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인한 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아니합니 Cł.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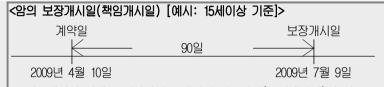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항의 암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 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 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때.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때(단.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합니다)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 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0 th 0 th 1 th |                        |
|--|------------------------|
| 구 분  | 지급금액                   |
|  | 계약일 <sup>주)</sup> 이후   |
| 암  | 이 특별약관의<br>보험가입금액 100% |
| 기타피부암,<br>갑상선암   | 이 특별약관의<br>보험가입금액 20%  |

- 주)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일은 출생일로 합니
- [2] 피부험자(부험대상자)가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 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말합 LICE.
- 4 『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제1항의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이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 1회 부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15세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그러나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출생일을 계약일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6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별표】(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함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 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 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현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지단 확정)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 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500/mm<sup>3</sup>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nity)이 25% 이 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1. 호중구 수가 500/mm3미만
- 2. 혈소판 수가 20.000/mm3미만
-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3미만
-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 Γŀ
- 4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혈 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3. 중대한가와사카류마티스열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가와사카·류마 티스열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심장합병증을 동 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 또는 제5조(판 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로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가와사키·류마티스열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가와사키병으로 인한 심장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확장이나 심장동맥류의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 ②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 with heart complication)』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이라 함은 해당 전문의에 의해 류마티스열로 진단되고, 심초음파상 반드시 류마티스열에 의한 한 개 이상의 심장판막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
- ②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열((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열 ((Rheumatic fever with valvular impairment)"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4.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린이개흉심장수술 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 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개흉심장 수술 을 받은 경우(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 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개흉심장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 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개 흉술을 한 후 심장의 병변에 대해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예)풍선판막성형술(Ballon Valvuloplasty)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친구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5.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진 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중증 세 균성 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 세균성 수막염(다만, 보험계 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중증 세균성 수막염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 『중증 세균성 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 감염인 경우의 세균성 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분류번호 6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수막염), 601(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 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 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있고
- 2. 동시에 아래와 같은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과 함께 그 결과로 『중대하고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을 보여야합니다. 이때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하여 내려져야합니다.

- ② 상기에서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라 함은 뇌자기공명(MRI), 전산화 단층촬영(CT)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두증(Hydrocephalus) 뇌종양(Brain abscess),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위축(Brain atrophy), 경막하혈종 (Subdural hematoma), 뇌기형(Megacisterna magna), 국소적 허혈(Focal infartion), 작은종괴(Mass),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 견들은 "중증 세균성 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상기에서 "중대하고 불가역적인 영구한 신경학적 결핍"이란 주관적인 자각 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 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상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 해당지급 률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26. 소아백혈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아백혈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소아백 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소아백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소아백혈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소아백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소아백혈병"이라 함은 악성으로 변형된 조혈세포가 골수 및 림프조직에서 악 성변형이 초래된 후 말초혈액으로 출현하고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소아백혈병 대상 질병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백혈병의 진단 확정은 해당 전문 의에 의해 임상학적으로 진단되고 병리전문의에 의해 골수조직검사 및 혈액검 사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위한니다

## [별표]

#### 소아백혈병 대상 질병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소아백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림프성 백혈병         | C91  |
| 2. 골수성 백혈병         | C92  |
| 3.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 27.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신 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 어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이하 『질병 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 지급금액 | 이 특별약관의<br>보험가입금액 5% 해당액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20년간<br>확정지급(20회)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2011년 10월 1일 ⇒ 사고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사고발생일: 2012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

-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질 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0]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1] 제10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2]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3]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은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 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4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28. 질병특정고도장해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진 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 『질병특정고도장해』 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라 함은 【별표】(질병특정고 도장해 판정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 【별표】(질병특 정고도장해 판정기준)의 2.~8.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 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 단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Cł.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질병 특정고도장해 판정기준

질병 특정고도장해는 다음에 적은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각 장해상태의 세부 판정기준, 판정시기, 장해진단전문의 및 장해진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 건복지부의「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릅니다.

#### 1. 팔다리의 절단장해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팔다리의 기능장해

- (1)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2)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3)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4)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5) 두 팔을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6) 두 팔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7)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8)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9) 두 다리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
- (10) 두 다리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 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 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 3. 척추의 기능장해

- (1) 척추의 병변으로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 기 어려운 경우
- ※ 척추의 기능장해는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 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완전강직(척추가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이 있어야 하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 인 경우 및 척추의 완전강직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의 기능장해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 4. 뇌병변장해

-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50m이상 보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경우
- (2)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 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 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 의 할 수 없는 경우
- (3) 아래 7.의 (3)뇌병변장해의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5. 시각장해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 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청각장해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호가 반드시 확인되 어야 합니다.
- 7.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아래의 장해 중 2가지 이상 에 해당되는 경우 (단. 뇌병변장해가 팔다리의 절단장해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해와 동반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 (1) 팔:다리의 절단장해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 위지관절 이 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 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팔다리의 기능장해
  - 1.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 우

-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4.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경우
- 5.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 8.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
- 9.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수된 경우
- 10.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경우
- 11.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12.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 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 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 (3) 닌병변장해
  -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100m이상 보 행이 어려운 경우,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어려 운 경우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2.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를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며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이 매우 어려운 경우
  - 3. 아래 8.의 (3)뇌병변장해의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4) 시각장해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경우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5) 청각장해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 2.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 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 일상에 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 인되어야 합니다.

#### (6) 언어장해

-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 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2.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3.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에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 만인 경우로서 정신지체장에 또는 발달장에(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 8.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위 7.의 장해 중 1가지 이 상에 반드시 해당되고 아래의 장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단, 뇌병변장해가 팔다리의 절단장해 또는 팔다리의 기능장해와 동반된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로 봅니다.)

#### (1) 팔다리의 절단장해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

#### (2) 팔다리의 기능장해

-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 우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 상 감소된 경우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 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우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경우
- 9.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 위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 10.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경 우
- 12.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 된 경우
- 13.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경우

- ※ 마비에 의한 팔·다리의 기능장해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 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 지 아니합니다.
- ※ 관절총운동범위란 해당 관절들의 평균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 ※ 팔의 3대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합니다.
- ※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 (3) 뇌병변장해

- 1.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평지에서 근거리 보행 만이 가능하고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에서 파행이 뚜렷하고 안전성이 없어 넘어지기가 쉬우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경우
- 2.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 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아래 @와 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걸을 때 파행이 뚜렷하며 계단 오르내리기에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가 쉬운 경우
  - (b) 그릇을 씻거나 돈을 세는 일. 주머니 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 내는 일. 비교적 굵은 끈을 매는 일. 양복 단추를 끼우는 일 등 주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

#### (4) 시각장해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경우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 ※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 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 청각장해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 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일상 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경우
- ※ 평형기능 이상의 판정은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 인되어야 합니다.

#### (6) 언어장해

-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 서 정신지체장에 또는 발달장에(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
-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 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
- ※ 말더듬. 조음 및 언어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판정되어야 합니다.

#### 29. 16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6대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6대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16대 질병』이라 함은 【별표】 (16대 질병 분류표)에

서 정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 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② 「16대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뇌혈관질환(160~169)의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허혈성심질환(120~125)의 진단은 병력과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

## 16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6대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 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 분류번호      |
|-------------|------------------------|-----------|
| 당뇨병         | 당뇨병                    | E10~E14   |
|             | 급성 류마티스열               | 100~102   |
|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105~109   |
| 심장질환        | 허혈성 심장질환               | 120~125   |
|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126~128   |
|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130~152   |
| 고 혈 압       | 고혈압 질환                 | l 10~l 15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160~169   |
| 가 질 화       | 바이러스 간염                | B15~B19   |
| 건 걸 퐌<br>   | 간의 질환                  | K70~K77   |
| 위·십이지장      | 위궤양                    | K25~K27   |
| 궤양          | 십이지장궤양                 |           |
| 7110        |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           |
|             | 갑상선의 장애                | E00~E07,  |
| 】<br>갑상선질환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             |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br>       | 170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170       |
|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J42   |
| <br>  만성하기도 |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           |
| 질환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br>       |           |
|             | 천식                     | J45       |
|             | 천식지속상태                 | J46       |

|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                |          |  |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
|             |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 J13      |  |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             | J15      |  |
| 폐 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             | 재향군인병                        | A48.1    |  |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             | 감염성 관절병증                     | M00~M03  |  |
| <br>  관절염   |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 M05~M14  |  |
|             | 관절증                          | M15~M19  |  |
|             | 기타 관절장애                      | M20~M25  |  |
|             | 노년성 백내장                      | H25      |  |
| 백 내 장       | 기타 백내장                       | H26      |  |
|             | 수정체의 기타장애                    | H27      |  |
| <br>  녹 내 장 | 녹내장                          | H40      |  |
| 7 41 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 <br>  결 핵   | 결핵                           | A15~A19  |  |
|             | 결핵의 후유증                      | B90      |  |
| 신 부 전       | 신부전                          | N17~N19  |  |
|             | 남성생식기의 질환                    | N40~N45, |  |
|             |                              | N47~N51  |  |
|             |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 N70~N77  |  |
| l<br>생식기질환  |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 N80~N95  |  |
|             | (습관유산자 제외)                   |          |  |
|             | (여성 불임 제외)                   |          |  |
|             |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 NOO      |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 N99      |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30. 14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4대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4대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14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14대 질병』이라 함은 【별표】(14대 질병 분류표)에서 정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 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을 말합니다.

② 『14대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뇌혈관질환(160~169)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허혈성심질환(120~125)의 진단은 병력과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

## 14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4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 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 분류번호      |
|-------------|------------------------|-----------|
| 당 뇨 병       | 당뇨병                    | E10~E14   |
|             | 급성 류마티스열               | 100~102   |
|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105~109   |
| 심장질환        | 허혈성 심장질환               | 120~125   |
|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126~128   |
|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130~152   |
| 고 혈 압       | 고혈압 질환                 | l 10~l 15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160~169   |
| 기지히         | 바이러스 간염                | B15~B19   |
| 간 질 환       | 간의 질환                  | K70~K77   |
| 위·십이지장      | 위궤양                    | K25~K27   |
| 게양          | 십이지장궤양                 |           |
| 110         |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           |
|             | 갑상선의 장애                | E00~E07,  |
| <br>  갑상선질환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             |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170       |
|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J42   |
| <br>  만성하기도 |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           |
| 질환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br>       |           |
|             | 천식                     | J45       |
|             | 천식지속상태                 | J46       |

| 대상이 되는 질병  |                           | 분류번호    |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            |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 J13     |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 폐렴          | J15     |
| <br>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 J16     |
| ш =        | 폐렴                        |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 재향군인병                     | A48.1   |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 노년성 백내장                   | H25     |
| 백 내 장      | 기타 백내장                    | H26     |
|            | 수정체의 기타장애                 | H27     |
| 녹 내 장      | 녹내장                       | H40     |
| = 41 8<br>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결 핵        | 결핵                        | A15~A19 |
|            | 결핵의 후유증                   | B90     |
| 신 부 전      | 신부전                       | N17~N19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31.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질병수술비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수술비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0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000-099)
- 5. HIP+(E66)
-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 7. 치핵,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184, K60~K62)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OO~KO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 포경(phimosis),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 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6.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32.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질병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 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근한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 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 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 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2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 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 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 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7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图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Ⅲ 회사는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보험금과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①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③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2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33. 시력교정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1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시력교정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 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 디옵터(Diopter) 이상의 근시 또는 +2디옵터(Diopter) 이상의 원시에 의한 굴 절이상(Anomalies of Refraction)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력교정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 다.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 <용어품이>

|디옵터(Diopter) :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거리의 역수로 표 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 합니다.

#### 34. 시력치료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시력치료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 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 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근시 또는 +4.25 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원시로 판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시력치료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난시는 제외합니다.

#### <용어풀이 >

[[옵터(Diopter]) : 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초점거리의 역수로 표 시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 합니다.

## 35. 부정교합치료비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부정교합치료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Angle씨 부정교합(不正咬合)분류법의 II급 또는 III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정교합치료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Angle씨부정교합분류>

| 구분   | 분류  |    |       |
|------|---|----|-------|
| 비급   | 하악대구치(아래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어금니)에 에서 후방)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 비해 | 원심(안면 |
| III급 | 하악대구치(아래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어금니)에<br>에서 전방)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 비해 | 근심(안면 |

② 제1항에서 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단순치열교정 등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학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36. 영구치상실보장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항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를 상실(喪失)했을 때는 상실영구치당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영구치상실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영구치상실(喪失)이란 우식증(齲蝕症) 또는 치주병(齒周病), 외상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拔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이하 "상실(喪失)"이라 합니다)
-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 2. 교정 및 위치이상: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拔去)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拔去)한 경우
- 3.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拔去)한 경우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제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 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 1)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발거일자
- 2)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3)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 다. 회사는 상기 "가". "나"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 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의 제2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 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37.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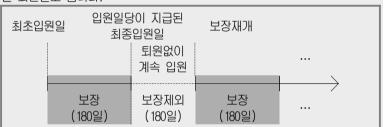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 병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 (【별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 로 합니다.
- 4 제1항의 경우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중환자실입원일당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 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 을 퇴원일로 봅니다.



- 5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 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II(1일이상)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

38.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비갱신 및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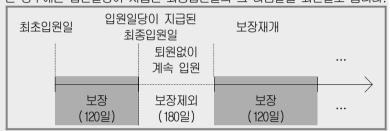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환경성질환」(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환경성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한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 라도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환경성질환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 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4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질환입원 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환경성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환경성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T]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환경성질환」이라 함은 「환경성 질환분류표」 (【별표】환경성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 Cł.
- 2 제1항의 "환경성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환경성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환경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 합니다.

| 구분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아토피             | 아토피 피부염                          | L20  |
| 알레르기성<br>비염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J30  |
| <u> </u>        | 천식                               | J45  |
|                 | 천식지속 상태                          | J46  |
| 급성              | 급성 기관지염                          | J20  |
| 기관지염            | 급성 세기관지염                         | J21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 J12  |
|                 |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 J13  |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폐 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                  | J15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 탄광부 진폐증                          | J60  |
|                 |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 J61  |
|                 |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 J62  |
|                 | 기타 무기물먼지에 의한 진폐증                 | J63  |
| 외부요인에           | 상세불명의 진폐증                        | J64  |
| 의한              |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 J65  |
| 폐질환             | 특수 유기물먼지에 의한 기도질환                | J66  |
|                 |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 J67  |
|                 | 화물의, 기스, 훈증기 및 물임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 병태 | J68  |
|                 |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 J69  |
|                 |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호흡기 병태               | J70  |
| 중금속에            | 약물 및 중금속 유발성 세뇨관-간질성 및 세뇨관 병태    | N14  |
| 궁금속에<br>  의한 질환 | 정상적으로는 혈액내에 없는 약물 및 기타물질의 존재     | R78  |
| ᅴ인 콘된           | 금속의 독작용                          | T56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39.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성장장애관려 특정질병(【별표】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다만, 보험계약 청 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 니다)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 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보험금이 지 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로 봅니다. 다만,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보장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성장장애관련질병입원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 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장애관련질병 보장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장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성장장애관련 질병입원보장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집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Γŀ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성장장애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 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부신 피질의 악성신생물                    | C74.0     |
| 두개인두관의 악성신생물                    | C75.2     |
| 두개인두관의 양성신생물                    | D35.3     |
| 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 E03       |
| (미만성 고이터를 동반한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제외) | (E03.0제외) |
| (고이터를 동반하지 않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제외) | (E03.1제외) |
| 기타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 E22.8     |
| 쿠싱 증후군                          | E24       |
|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지연           | E45       |
| 비타민 D 결핍                        | E55       |
| 만성 신장질환                         | N18       |
| 상세불명의 신부전                       | N19       |
| 신장성 골디스트로피                      | N25.0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40.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모야모야병개두수술 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 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 (모야모야병 분류표)에서 정한 모야모야병(이하 『모야모야』이라 합니다)(다 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때에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자긴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개두를 동반한, 직접혈관문합술(Direct revascularization), 간접혈관문합술(Indirect revascularization), 병합 혈관문합술(Combined revascularization), 혈종제거술(Hematoma evacuation) 등의 수술을 한 것을말합니다.

③ 제1항의 "모야모야병"이라 함은 속목동맥의 말단부 혹은 중간대뇌동맥의 기시부가 서서히 폐색되는 질환으로서 제6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모야모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모야모야병 분류표))을 말합니 다.

④ 모야모야병의 진단 확정은 임상증상(병력, 신경학적검사 등)과 함께 영상학적 진단(CT, MRI/MPA, Cerebral angiograpy)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Cł.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모야모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모야모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모야모야병     | 167.5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 41. 소아탈장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소 아탈장 분류표)에서 정한 소아탈장(이하 『소아탈장』이라 합니다)(다만, 보 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소아탈장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서 『소아탈장』이라 함은 【별표】(소아탈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별표]

## 소아탈장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소아탈장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서혜부 탈장(inguinal hernia)                    | K40  |
| 넙적다리 탈장 (femoral hernia)                   | K41  |
| 배꼽 탈장 (umbilical hernia)                   | K42  |
| 복벽 탈장 (ventral hernia)                     | K43  |
| 기타 복부 탈장 (other abdominal hernia)          | K45  |
| 상세불명의 복부 탈장 (unspecified abdominal hernia) | K46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42. 뇌병변장애진단비 특별약관 42-1.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병변(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장애인 등록 절차에 따라 뇌병변장애 1~6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병변장애진단비(1~6급)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
| 1~6급 | 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이후 뇌병변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뇌병변 장애인(1~6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CŁ.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뇌병변"이라 함은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 비진행 성(非進行性)으로 영구적인운동과 체위(體位)에 장애를 초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특수아동교사 등)들의 종합적인 진단, 평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제1항의 "뇌병변"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부상 "뇌병변"의 전형적인 병력의 존재. 이학적 검사 그리고 뇌전산화단층 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술(SPECT). 뇌파검사(EEG)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42-2. 뇌병변장애진단비(1~3급)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병변장애진단비(1~3) 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 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병변(다 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의 장애인 등록 절차에 따라 뇌병변장애 1~3급 장애인으로 등록 이 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병변장애진단비(1~3 급)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뇌병변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구분   | 지급금액       |
|------|------------|
| 1~3급 | 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뇌병변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뇌병변 장애인(1~3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5조(뇌병변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뇌병변" 이라 함은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 비진행성(非進行性)으로 영구적인운동과 체위(體位)에 장애를 초래하여 해당분야전문가(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특수아동교사 등)들의 종합적인 진단, 평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병변"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부상 "뇌병변"의 전형적인 병력의 존재, 이학적 검사 그리고 뇌전산화단층 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술(SPECT), 뇌파검사(FEG)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42-3.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병변(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장애인 등록 절차에 따라 뇌병변장애 1~2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병변장애진단비(1~2급)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
| 1~2급 | 가입금액의 100% |

2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 이후 뇌병변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으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뇌병변 장애인(1~2급) 등록이 된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5조(뇌병변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뇌병변" 이라 함은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 비진행 성(非進行性)으로 영구적인운동과 체위(體位)에 장애를 초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특수아동교사 등)들의 종합적인 진단, 평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제1항의 "뇌병변"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부상 "뇌병변"의 전형적인 병력의 존재. 이학적 검사 그리고 뇌전산화단층 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술(SPECT). 뇌파검사(EEG)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43.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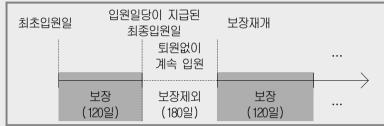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누적외상 성질환(VDT증후군)"(【별표】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 분류표)(다만, 보 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누적외상성질환(WDT증후군)입원일당으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근육장애                      | M60~M63      |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M65~M68      |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 M35          |
| 기타 연조직장애                  | M70~M79      |
| 기타 관절연골장애, 인대장애           | M24.1, M24.2 |
| 관절통(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M25.5, M25.6 |
| 경추상완증후군                   | M53.1        |
| 팔의 단발 신경병증                | G56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상해. 질병 및 기타 특별약관

## 1. 5대장기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Cł.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인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장기이식수술비로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서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 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Γŀ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2.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를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인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이 특별 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각막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 LICE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전 용합니다.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3. 3대장애진단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장애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Γŀ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 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 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 장애인을 말합니다. 【별표】(3대장애분류표) 참조)이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3대장애진단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3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3대장애진단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천적 장애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3대장애 분류표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 언어장애인                                     |
|--|---|---|
| 식 시력표에 의하여<br>측정한 것을 말하며<br>굴절이상이 있는 사<br>람에 대하여는 교정<br>시력을 기준으로 한<br>다. 이하 같다)이<br>0.02이하인 사람 | 2. 한 귀의 청력손실이<br>80데시벨(dB)이상,<br>다른 귀의 청력 손실<br>이 40데시벨(dB) 이<br>상인 사람<br>3. 두 귀에 들리는 보통<br>말소리의 명료도가 | 음성 기능 또는 언어<br>기능에 영속적인 현저<br>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4. 디스크질환 및 관절증(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디스크 질환(추간판 탈출증)(이하

『추간판 탈출증』이라 합니다) 또는 관절증(엉덩.무릎)(이하 『관절증』이 라 합니다)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디스 크질환 및 관절증(이차성 및 상세불명 제외)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2] 제1항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함은 척추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통증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써 【별표1】(디스크 질환(추간판 탈출증) 분 류표)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관절증』이라 함은 【별표2】(관절증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집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에서 정한 사항
- 2.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으로 인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기타 양쪽 이차성 고관절증(M16.6)
- 2. 기타 이차성 고관절증(M16.7)
- 3. 상세불명의 고관절증(M16.9)
- 4.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M17.4)
- 5. 기타 이차성 무릎관절증(M17.5)
- 6.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M17.9)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 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별표1】

## 디스크 질환(추간판 탈출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디스크 질환(추간판 탈출증)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 대 상 항 목 | 분류번호 |
|-------------|---------|------|
| 1. 경추간판장애   |         | M50  |
| 2. 기타 추간판장애 |         | M51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2]

## 관절증 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관절증 질환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 상 항 목           | 분류번호  |
|-------------------|-------|
| 1. 고관절증           |       |
| 양쪽 일차성 고관절증       | M16.0 |
| 기타 일차성 고관절증       | M16.1 |
| 형성이상으로 인한 양쪽 고관절증 | M16.2 |
| 기타 형성이상성 고관절증     | M16.3 |
| 양쪽 외상후 고관절증       | M16.4 |
| 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 M16.5 |
| 2. 무릎관절증          |       |
|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 M17.0 |
|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 M17.1 |
| 양쪽 외상후 무릎관절증      | M17.2 |
|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 M17.3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5. 자녀배상책임 II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자녀배상책임Ⅱ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를 입힘으로써

자녀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 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 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 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2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 액을 뺍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 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 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 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 회의 사고 마다 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보상한도로 보상
-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가'목. '나'목 또는 '마'목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대상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 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 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 1.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2.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의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3. 자녀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 중되 배상책임
- 4.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5. 자녀의 심신상실에 인하는 배상책임
- 6. 자녀 또는 자녀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인하는 배상책임
- 7.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 총기 (공기총 제 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인하는 배상책임

# 제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 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7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돌려 드립니다.

## 제8조(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 애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보험금의 분담)

-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1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

- 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제1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 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에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4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 전 알 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 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제1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 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7조(보험금의 지급)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하여 이 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회사가 제1항의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2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8조(만 기환급금의 지급),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6. 의료사고법률비용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 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 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계약 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 한 경우

#### 제4조(보험금의 분담)

[]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 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7.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특별약관【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열거 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 (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 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 2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 액을 뺍니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 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 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 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라 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 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④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 회의 사고 마다 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손해를 더한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보상한도로 보상
- 2.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가'목, '나'목 또는 '마'목 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
- 3.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 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인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에 인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인한 배상책임
-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 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 관리에 인한 배상책임
-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 상하여 드립니다.
- 11.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제5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 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 형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7조(손해방지의무)

-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재).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받는 일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 액을 뺍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미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 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 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 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 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 제9조(보험금의 분담)

- []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 는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 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제11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에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 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제1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 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각호의 통지 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6조(보험금의 지급)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청 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 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위하여 이 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 Γŀ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 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 4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 [5] 회사가 제1항의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 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 Cł.

## 제19조(특별약관의 갱신)

- 1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2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8조(만 기환급금의 지급),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치아치료보장관련 특별약관

### 1. 영구치보존치료보장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자연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복구를 도모하는 치료(이하 "치아보존치료"라 합니다.)를 위하여 치과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영구치보존치료를 진단 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구분         |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보장<br>보험금(영구치) | 비고      |
|------------|-----------------|----------------------|---------|
|            | 아말감,<br>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1만원              |         |
| 치아<br>  보존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5만원              | 한도없음    |
| 치료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10만원              |         |
|            | 크라운             | 치아당10만원              | 연간 3개한도 |

②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목질환)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응당일"이라 합니다)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 □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레진필링 치료를 진단받고 레진필링 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크라운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은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치아우식증 (충치)을 제거하고 임시충전치료를 받았거나 신경치료를 시작한 경우 또는 임 시크라운을 장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 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8 제 1항에서 치아보존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치료항목        | 정의   |
|----------------|-------------|--|
|                | 아말감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br>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
|                | 글래스아<br>이노머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br>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br>합니다.  |
| 치아<br>보존<br>치료 | 레진필링<br>치료  |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br>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br>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br>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br>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br>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br>에 쓰입니다. |
|                | 인레이·<br>온레이 |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br>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br>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br>합니다.   |
|                | 크라운         |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br>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br>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

9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 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새로이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 환)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추가 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4. 보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일 경우
  - 5.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180일 이 내에 동일한 치아에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 6.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제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3. 치과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4 진류비계산서
-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2. 유치보존치료보장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유치(자연 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이하 "치아보존치료"라 합니다.)를 위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 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정한 유치보존치료를 진단 받아 치료한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 구분               | 치료항목            | 치아보존치료보장 보험금<br>(유치) | 비고         |
|------------------|-----------------|----------------------|------------|
| <del>-</del> 101 | 아말감,<br>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5천원              | =1.040     |
| 치아<br>  보존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2만5천원            | 한도없음       |
| 조논<br>  치료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5만원              |            |
| \J               | 크라운             | 치아당 5만원              | 연간<br>3개한도 |

- ②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응당일"이라 합니다)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VIID]]

피보험자의 상악 좌측 송곳니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여 2011년 1월 1일에 레진필링치료를 종료한 경우, 동일한 치아에 치아우식증으로

- □ 2011년 6월 1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크라운 치료 보험금 지급 시 이미 받은 레진필링치료 보험금은 차감합니다.
- □ 2011년 7월 1일에 크라운치료를 개시한 경우, 크라운 치료 보험금 지급 시 이미 받은 레진필링치료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크라운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 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

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6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유치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 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해당 유치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치아우식증 (충치)을 제거하고 임시충전치료를 받았거나 신경치료를 시작한 경우 또는 임 시크라운을 장착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 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图 제 1항에서 치아보존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치료항목        | 정의   |
|----------------|-------------|--|
|                | 아말감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br>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
|                | 글래스아<br>이노머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br>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
| 치아<br>보존<br>치료 | 레진필링<br>치료  |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br>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원<br>상회복시켜 형태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br>를 말하며, 이하 『충전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br>다. 심미성이 요구되고 교합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br>는 치아 또는 손상부위가 작은 치아를 충전할 경우<br>에 쓰입니다. |
|                | 인레이·<br>온레이 |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br>도재 등의 재료로 주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br>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                | 크라운         | 임상적 치관(머리부분)의 모든 면을 금이나 세라믹등의 충전물로 덮어 치아의 형태와 기능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

9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

당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T]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 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새로이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 환)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추가 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4. 보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일 경우
- 5.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180일 이 내에 동일한 치아에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 6.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제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3. 치과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4. 진료비계산서
-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3. 치아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 【갱신계약】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연치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해당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임플란트(Implant)(이하 "치아보철치료"라 합니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치료항목                    | 치아보철치료보장       | 지급한도  |
|-------------------------|----------------|-------|
| 가철성의치<br>(틀니,Denture)   | 보철물당 100만원     | 연간 1회 |
| 고정성가공의치<br>(브릿지,Bridge)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 연간 3개 |
| 임플란트<br>(Implant)       | 영구치발거 1개당 50만원 | 연간 3개 |

- ② 제1항의 질병은 상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 "계약응당일"이라 합니다)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 □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여 크라운 치료를 지단받고 크라운 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임플란트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임플란트 보험 금만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의 상악에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의 복합적으로 치료받 는 경우(Implant Overdenture), 해당 치료 종료시 총의치(전체틀니)와 임 플란트 보험금 중 한 가지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 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 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6 제 1항에서 치아보철치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치료항목                            | 정의   |
|----------------|---------------------------------|--|
| 치아<br>보철<br>치료 | 가철성의치<br>(틀니,<br>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br>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br>대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br>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br>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
|                | 고정성<br>가공의치<br>(브릿지,<br>Bridge) | 지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                | 임플란트<br>(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7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 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새로이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5 보험기간 중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구치를 발거한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4. 기타 영구치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5.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 하더라도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일한 치아에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 6.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제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2.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 가. 진료된 치아위치(또는 치아번호)
  - 나. 진료내용
  - 다.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3. 치과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4. 진료비계산서
- 5.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붙임>용어의 정의

| 용 어              | 정 의   |
|------------------|---|
|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br>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br>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
|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br>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br>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br>합니다.  |
|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 치아우식증(<br>충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O2(치아우식증(충치)), KO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
| 치주질환<br>(잇몸질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O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
| 치아수복물<br>(齒牙修復物) |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br>말합니다.   |
| 치아보철물            |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

#### 태아관련 특별약관

# 1. 출생위험보장 특별약관 (저체중아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2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 제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날에 시작하여 이 날로부터 1년(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심한 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합니다. 이하『사고발견기간』이라합니다)이 지난 때에 끝납니다. 단, 사고발견기간 종료전이라도 사고가 발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보험대상자, 보험계약 체결시 임신 22주 이 내의 태아에 한합니다.)에게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저체중아<br>출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체중이 출생시 2,000그램 이하인 경우(이하『저체중아 출생』이라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br>보험가입금액<br>의 1%   |
| 장해<br>출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별표1】<br>(장해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해(이<br>하「장해 출생」이라 합니다)를 가<br>지고 있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br>보험가입금액<br>의 10%  |
| 심한장해<br>출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별표2】<br>(심한장해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br>해(이하「심한장해 출생」이라 합<br>니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이 특별약관의<br>보험가입금액<br>의 100% |

- ② 보험금은 사고발견기간 이내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저체중아 출생, 장해출생, 심한장해 출생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저체중아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이 중복된 경우)

- ① 1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저체중이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중 2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시기가 다르게 발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각각에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1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해 중 2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장해에 대해서만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1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심한장해 중 2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심한장해에 대해서만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모(임산부)의 고의
- 2 보험계약자의 고의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8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 [1] 보험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 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근한니다
- 2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후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1】

## 장해의 대상

장해의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 1. 순화기계 기형

1) 심실중격결손증

좌우 심실의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높은 집심실로부터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 따라서 우 심실에 부담이 생겨 나중에 심부전을 일으킨다.

2) 심방중격결손증 좌우의 심방사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

#### 2. 근골격계 기형

- 1) 다지증 : 지(指, 趾)가 6개 이상 있는 경우
- 2) 합지증 : 지(指, 趾)가 붙어 있는 경우
- 3) 결지증 : 지(指, 趾)가 부족한 경우
- 4) 열수(족) : 합지(趾)증이 심화되어 지(趾)가 붙어 있어야 할 곳보다 안쪽까지 찢어져 있는 경우
- 5) 내반수(족) : 手(足)가 전체로서 안쪽으로 위어져 手(足)의 뒤쪽이 안쪽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는 경우
- 6) 사경 : 목 한쪽이 휘어져 턱이 반대쪽에 올라간 상태의 경우

#### 3. 소화기계 기형

- 1) 토순 : 윗입술이 찢어진 경우(중앙이 찢겨있는 경우, 혹은 우 또는 자로 치우쳐진 곳에 찢겨져 있는 경우)
- 2) 구개열 : 토순보다도 더욱 심한 것으로 입안 구개골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
- 3) 선천성식도폐색증 : 식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 4) 선천성장폐색증 : 장이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 5) 선천성담도폐색증 : 담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본 증상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에 담즙이 분비되지 않음)
- 6) 선천성항문폐색증 : 항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 4. 뇌신경계 기형

- 1) 수두증 : 뇌척수액의 증가로 뇌실비대에 의해 머리가 커진 경우
- 2) 척추파열 : 척추중앙에 깨진 선이 있어 그곳으로부터 척수나 척수막 등이 바깥으로 부풀어져 나온 경우

#### 5. 비뇨생식기계 기형

- 1) 요도상열 : 단순히 귀두 뒷면에 찢어진 선이 있는 경우나 때로는 음 순하면전장에 열구가 있는 경우
- 2) 요도하열: 요도가 음 선단에 미치지 못하고 음 하면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가 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3) 선천성요도폐색증 : 요도가 폐쇄되어 있거나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 4) 반음양: 남성이면서 외음부가 여성처럼 보이는 경우,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가 많고 이것을 남성가 성반음양이라 한다.
- 6. 감각기계 기형

외이도폐쇄 : 외이도가 태어나면서 폐쇄한 상태에 있는 경우

7. 훼닐키톤뇨증(Phenylketonuria)

선천성대사이상의 일종으로 방치해두면 정신박약으로 된다. 치료는 페니르알린을 제거한 특수우유와 특수한 식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지만 치료는 생후 2~3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후 1개월에 집단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 【별표2】

#### 심한장해의 대상

심한장해의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중증기형

- 1) 심한 포코멜리아(단지증, Phocomelia): 사지의 장골에 결손 또는 단축이 있어 수족이 직접 또는 단축한 장골을 가지고 체구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 사지의 이상은 상지에서 잘보이며 하지의 이상은 드문 경우이며, 이 기형은 탈리도마이도(Thalidomide)계 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2) 무지증 : 사지가 완전하게 결손한 경우로서 상당히 심한 기형인 것
- 3) 절단증 : 태아일 때 사지가 양막에 말려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지가 절단된 경우

#### 2. 뇌성마비

되성마비란 (¬)임신중의 장해, (ㄴ) 출생시의 장해, (ㄷ)출생후 영아기의 장해등에 의해 되조직에 이상을 초래하여 수족이나 발성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병이다. 되성마비의 원인으로 (¬)임신중의 장해, (ㄴ) 출생시의 장해에 의한 것 이외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장해등이 있으나 본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임신중 또는 출산시의 장해에 인한 되성마비에 한한다.

3. 다운증후군의 염색체이상의 기형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 얼굴이 넓적하고 코가 작고 안열이 위로 삐뚤어져 사행하는 등 다운증후군의 특징적 얼굴형태를 가자는 경우로써 근육긴장감퇴, 지능저하(장해)등의 주요 증상이 보인 다.

# 2. 신생아보장 특별약관 (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일당)

#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 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

- 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 제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저체중아육아비용)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임산부가 미숙아(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조 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3일 이상 사용했을 때 최고 60일을 한도로 하여 2일 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해당 보장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저체중이 육아비용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신생아입원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신생아가 【별표】 출생 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이하 『출생전후기 질병』이라 합니 다)에서 정하는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 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해당 보장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생아 입 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신생아 입원일당의 지급일 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신생이가 동일한 출생전후기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 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출생전후기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 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 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 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 라 신생아입원일당은 계속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5 다태아 출산의 경우 태어난 각각의 신생아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이 특약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중아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6조(출생전후기의 정의)

이 특약에서 『출생전후기』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7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출생전 후기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 는 것을 말합니다.

##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출생일로 부터1년으로 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모성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br>받은 태아 및 신생아 | P00~P04 |
| 2. 임신 기간 및 태아 발육과 관련된 장애                          | P05~P08 |
| 3. 출산 외상  | P10~P15 |
| 4.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 P20~P29 |
| 5.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 P35~P39 |
|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 P50~P61 |
| 7.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장애                  | P70~P74 |
|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 장애                              | P75~P78 |
| 9.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 P80~P83 |
| 1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 P90~P96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3.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 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

- 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 2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 제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선천이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 이상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이상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리지아니합니다.

#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류법 제54조(신의류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 분류번호    |
|-----------|---------------------|---------|
| 1.        |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Q00~Q07 |
| 2.        |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 Q10~Q18 |
| 3.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Q20~Q28 |
| 4.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Q30~Q34 |
| 5.        | 구순열 및 구개열           | Q35~Q37 |
| 6.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38~Q45 |
| 7.        | 생식기관의 선천 기형         | Q50~Q56 |
| 8.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Q60~Q64 |
| 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Q65~Q79 |
| 10.       | 기타 선천 기형            | Q80~Q89 |
| 1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Q90~Q99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4.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 특별약관

##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 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 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 합니다.

2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 제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별표】(선천 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II 에서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 체 이상(이하『선천이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수술비(혀유착제외)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 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선천이상수술비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

####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Q00~Q07     |
| 2.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 Q10~Q18     |
| 3.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Q20~Q28     |
| 4.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Q30~Q34     |
| 5. 구순열 및 구개열           | Q35~Q37     |
| 6.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38~Q45     |
| (혀유착증은 제외)             | (Q38.1은 제외) |
| 7. 생식기관의 선천 기형         | Q50~Q56     |
| 8.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Q60~Q64     |
| 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Q65~Q79     |
| 10. 기타 선천 기형           | Q80~Q89     |
|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Q90~Q99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5.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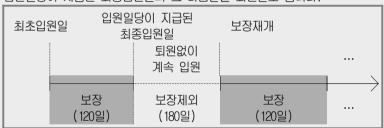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②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 제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천이 상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선천이상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한니다
- ③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선천이 상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입원한 경우 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선천이상입원일당이 지 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4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천이상 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5조(「선천이상」의정의 및 진단확정)

-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 체 이상 분류표 (【별표】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2] 제1항의 「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 한니다

####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 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7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별표】(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 선천이상수술비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함

#### 부양자관련

#### 1. 임신출산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에 한합니다. 이하『피보험자(보험 대상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5조(임신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임신출산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 용합니다.

## 제5조(임신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의 『임신출산관련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에 있어서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임신출산 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 부종, 단백뇨 및 고혈 압성 장애,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 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 병증을 말합니다.

[2] 『임신출산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다.

####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7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

LICt.

### 제8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 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위한니다

#### [별표]

####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 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 010~016 |
| 2.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 020~029 |
| 3.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 030~048 |
| 4.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 060~075 |
| 5.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 085~092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Cł.

#### 2.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에 한합니다. 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5조(임신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3일초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 도로 합니다.

③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임신출산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의『임신출산관련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 『임신출산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신출산관련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등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신출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 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임신출산관련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질환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임신출산관련질환의 치 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 원후 최초로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임신출산관련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제7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 LIL

### 제8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 구하고. 별도로 일시남으로 남입하여야 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 【별표】(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 임신출산질환수술비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함

## 3. 모성사망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모성사망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에 한합니다. 이하『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별표】(여성 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여성산과(임신,출산 및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중 또는 분만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모성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여성산과(임신,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의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6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 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 병분류표)에서 정한 유산된 임신, 임신,출산및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 장애,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 한 분만문제와 관려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분만, 주로 산후기 에 관련된 합병증을 말합니다.

[2]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5조(부헝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임신 중 또는 분만후 42 일까지로 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

구하고, 별도로 일시남으로 남입하여야 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별표]

## 여성산과(임신,출산및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 010~016 |
| 2.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 020~029 |
| 3.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 030~048 |
| 4.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 060~075 |
| 5.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 085~092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4. 유산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에 한합니다. 이하『피보험자(보험 대상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유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산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 『유산』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별표】 (유산 분류표)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② 『유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6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 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 BLOO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7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 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합니다

## [별표]

#### 유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 CŁ.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
| 1. 자궁외 임신                     | 000  |
| 2. 포상기태                       | 001  |
| 3.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002  |
| 4. 자연유산                       | 003  |
| 5. 의학적 유산                     | 004  |
| 6. 기타유산                       | 005  |
| 7. 상세불명의 유산                   | 006  |
|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 007  |
| 9.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 | 008  |

제7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 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Γŀ

## 5. 유산입원일당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 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부양자(임신한 모(母)에 한합니다. 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유산』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산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유산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③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유산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유산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 『유산』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별표】(유산 분류표)에서 정한 자궁외 임신, 포상기태, 기타이상 임산부산물, 자연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시도된 유산의 실패,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타 임신에 따른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 『유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유산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산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산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후 최초로 유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제7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인한니다

#### 【별표】(유산 분류표)

- 유산수술비 특별약관의 별표안 동일함

#### 6.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양자질 병사망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주된 부양자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이하『피보험 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2 제1항에서 주된 부양자라 함은 민법 제 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를 말합니다.

- 1. 직계혈족
- 2. 기타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의 제2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혈족. 친척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자질병사망연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 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부양자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 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의 부양자질병사망연금 또는 부양자질병80%이상후유장해연금(이하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 여 드립니다.

| 지급명칭           | 지 급 금 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 | 보험가입금액의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
| 유장해연금          | 5% 해당액  | 20년간 확정지급(20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 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2011년 10월 1일 => 사고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사고발생일: 2012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2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 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 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지급받은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부양자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III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①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3]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부양자질병80%이 상후유장해연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5] 회사는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부양자질병사망연금과 부양자질병80% 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7.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양자상 해사망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 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주된 부양자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이하『피보험 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2 제1항에서 주된 부양자라 함은 민법 제 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를 말합니다.

- 1. 직계혈족
- 2. 기타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의 제2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혈족, 친척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자상해사망연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부양자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부양자상해사망연금 또는 부양자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이하 『부양자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         |                |
|---|---------------|---------|----------------|
|   | 지급명칭          | 지 급 금 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
|   | 후유장해연금        | 5% 해당액  | 20년간 확정지급(20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 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2011년 10월 1일 ⇒ 사고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사고발생일: 2012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 [2]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 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부양자상해사망. 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 후유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10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III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부양자상해80%이상후유장해연 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22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부양자상해사망연금과 부양자상해80%이상후유장해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 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8.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1] 이 특별약관에서의 자녀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중 지정한 자녀(이하『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자녀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 LIL
- ③ 제2항에서 부양자라 함은 민법 제 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를 말합니다.
- 1. 직계혈족
- 2. 기타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4 제3항의 제2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혈족. 친척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자녀교육자금 | (질병사망)보험금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 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유자녀교육자금 ( 질병고도후유)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유자녀교육자금 ( 질병사망) 또는 유자녀교육자금 ( 질병고도후 유)(이하 『유자녀교육자금 | (질병사망/고도후유)』이라 합니다.)보험금은 지급기준일(사고발생 해당일)부터 각 지급연령(자녀의 보험나이 기준)에 도 개하는 지급해당일에 아래와 같이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 대하는 처음해당은해 어래되 들어 극당처음하여 그림되다. |                          |                              |                    |  |
|--------------------------------|--------------------------|------------------------------|--------------------|--|
| 구분                             | 지급연령<br>(자녀의 보험나이<br>기준) | 지급금액<br>(이 특별약관<br>보험가입금액기준) | 지급기준               |  |
|                                | 초등학교(7세~12세)             | 20%                          |                    |  |
| <br>  교육자금                     | 중학교(13세~15세)             | 20%                          | 각 지급연령의            |  |
|                                | 고등학교(16세~18세)            | 25%                          | 매년 지급해당일           |  |
|                                | 대학교(19세~22세)             | 30%                          |                    |  |
| 결혼<br>준비자금                     | 29세                      | 125%                         | 지급연령의<br>지급해당일(1회)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 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2011년 10월 1일 ⇒ 사고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사고발생일: 2012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2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 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 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 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에서이미지급받은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7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 태에 해당되는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 후유)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 사망/고도후유)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图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 유)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9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

-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 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Ⅲ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Ⅲ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①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데 회사는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과 유자 너교육자금 I (질병고도후유)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9.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자녀교육자금Ⅱ(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자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1] 이 특별약관에서의 자녀는 보통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중 지정한 자녀(이하『자녀』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자녀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이하『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 LIL
- ③ 제2항에서 부양자라 함은 민법 제 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를 말합니다.
- 1. 직계혈족
- 2. 기타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4 제3항의 제2호에서 친족이라 함은 혈족. 친척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유자녀교육자금॥(상해고도후유)보험금을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 또는 유자녀교육자금((상해고도후 유)(이하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이라 합니다.)보험금은 지급기준일(사고발생 해당일)부터 각 지급연령(자녀의 보험나이 기준)에 도 개하는 지급해당일에 아래와 같이 확정지급하여 드립니다

| 대하는 처음해당은해 어래되 들어 극당처음하여 그림되다. |                          |                              |                    |  |
|--------------------------------|--------------------------|------------------------------|--------------------|--|
| 구분                             | 지급연령<br>(자녀의 보험나이<br>기준) | 지급금액<br>(이 특별약관<br>보험가입금액기준) | 지급기준               |  |
|                                | 초등학교(7세~12세)             | 20%                          |                    |  |
| <br>  교육자금                     | 중학교(13세~15세)             | 20%                          | 각 지급연령의            |  |
|                                | 고등학교(16세~18세)            | 25%                          | 매년 지급해당일           |  |
|                                | 대학교(19세~22세)             | 30%                          |                    |  |
| 결혼<br>준비자금                     | 29세                      | 125%                         | 지급연령의<br>지급해당일(1회)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 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사고발생일: 2011년 10월 1일 ⇒ 사고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사고발생일: 2012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2]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3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 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기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图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 태에 해당되는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로 유자녀교육자금॥(상해사망/고도후유)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녀교육자금 II (상해사망/고도 후유)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유자녀교육자금 II (상해사망/

- 고도후유)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Ⅲ 제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유자녀교육자금Ⅱ(상해사망/고도후 유)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Ⅲ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유자녀교육자금Ⅱ(상해사망)과 유자녀교육자금Ⅱ(상해고도후유)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중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별표와 동일

### 실손의료비관련 특별약관

# 1. 실손의료비 【갱신형】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 합니다)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당보입니다

#### 제1장 일반사항

#### 제1조(당보종목)

1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 형, 질병통원형, 종합(상해와 질병을 말합니다)입원형, 종합통원형 등 총 6개 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6개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담토          | 년종목<br>-  | 보상하는 내용  |  |
|-------------|-----------|--|--|
| 사들          | <u>입원</u> |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u>병원</u> 에 <u>입원</u> 하<br>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u>상해</u>   | <u>통원</u> |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u> 하여<br>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ΖΙΗΙ        | <u>입원</u> |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질병<br> <br> | <u>통원</u> |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병원에 <u>입원</u>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br><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u>상해</u> 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  |
|             | <u>입원</u> |  |  |
| 종합          | <u>통원</u> | <u>원에 통원</u> 하여 치료를 받거나 <u>처방조제</u> 를 받은 경우에   |  |

2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실손 의료비'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과 같으며 해당 용어는 이 약관에

서 밑줄을 그어 표시합니다.

### 제2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해입원형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 LICt.

| 구 분                      | 보상금액  |
|--------------------------|---|
| 입원실료,<br>입원제비용,<br>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br>정한 <u>의료급여</u> 에서 정한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br>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br>액(다만, 10% 해당액이 <u>계약</u> 일 또는 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br>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br>다) |
| 상급병실료<br>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u>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u>입원</u>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 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 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 LICt.

# (2) 상해통원형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 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 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보 상 한 도   |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u><br>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br>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br>가입금액 <sup>주)</sup>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br>180회 한도) |
| <u>처방조</u><br><u>제비</u>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여</u> 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더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항 목   | 공제금<br>액 |
|---|---|----------|
| 외래<br>( <u>외래제</u><br><u>비용</u> 및<br>외래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
| <u> </u>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 <u>병원, 병원</u> , 치과   | 1만       |
| 합계)                                     | <u>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u>   | 5천원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br>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u>약국</u> , 동법<br>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br>처방, 조제( <u>의사</u> 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br>서 <u>약사</u> 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 원치료시(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 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외 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4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 학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더하 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 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 를 계산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 로 나누어집니다.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 립니다.

| 구 분                          | 보상금액   |
|------------------------------|--|
| 입원실료,<br>입원제비용<br>,<br>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여</u> 법에서<br>정한 <u>의료급여</u> 에서 정한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br>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br>액(다만, 10% 해당액이 <u>계약</u> 일 또는 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br>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 상급<br>병실료<br>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br>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br>하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u>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br>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2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 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 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 일로부터 365일(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 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질병입원형



- ⑤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입원</u>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병원</u>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입원의료비</u>를 계산합 니다.
- 7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 图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서 정한 <u>계약</u>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u>계약</u>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u>계약</u>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4) 질병통원형

① <u>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에 통원</u>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u>외래제비용</u>, <u>외래수술비</u>) 및 <u>처방조제비</u>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보 상 한 도   |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u><br>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br>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br>가입금액 <sup>주)</sup>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br>180회 한도) |
| <u>처방조</u><br><u>제비</u>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여</u> 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방조제비</u> 의 보험가입금액 <sup>주)</sup>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u>처방조제비</u>는 회(건)당 더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항 목   | 괢         |
|---|---|-----------|
| 외래<br>( <u>외래제</u><br><u>비용</u> 및<br>외래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
| 1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 <u>병원,</u> <u>병원</u> , 치과<br><u>병원</u> , 한방 <u>병원</u> , 요양 <u>병원</u>   | 1만<br>5천원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br>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u>약국</u> , 동법<br>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br>처방, 조제( <u>의사</u> 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br>서 <u>약사</u> 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

②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통원</u>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이 만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외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 을 적용합니다.
- 4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더하 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 ⑥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 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 를 계산합니다.
- 7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图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9] OI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 (5) 종합입원형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금액(상해당, 질 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보상금액  |  |
|---------------------------------|---|--|
| 입원실료,<br>입원제비용,<br><u>입원수술비</u>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여</u> 법에서<br>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br>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br>이 <u>계약</u> 일 또는 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br>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
| 상급<br>병실료<br>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u>기준병실</u> 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br>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br>며, 1일 평균금액은 <u>입원</u>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br>총 <u>입원</u>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 학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당, 질병당 각각 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 니다.
- [5]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 나의 상해로 봅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u>입원</u>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u>상해</u>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입원</u>하여 치료를 받던 중 <u>보험기간</u>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u>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u>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7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병원</u>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u>입원의료비</u>를 계산합 니다.
- 图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u>계약</u>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Ⅲ 제9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서 정한 <u>계약</u>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u>계약</u>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6) 종합통원형

① 회사는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상해</u>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u>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u>를 받은 경우에는 <u>통원의료비</u>로서 매년 <u>계약</u>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u>외래제비용</u>, <u>외래수술비</u>) 및 <u>처</u>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 구 분                     | 보 상 한 도  |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u><br>여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br>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br>가입금액 <sup>주)</sup>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br>180회 한도) |
| <u>처방조</u><br><u>제비</u>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u>의료급여</u> 법에서 정한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u>처방조제비</u> 의 보험가입금액 <sup>주)</sup> 을 한도로 보상(매년 <u>계약</u> 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u>처방조제비</u>는 회(건)당 더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u>계약자</u>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항목  | 괢         |
|--|---|-----------|
| 외래<br>( <u>외래제</u><br><u>비용</u> 및<br><u>외래</u><br>수술비<br>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 <u>병원,</u> <u>병원</u> , 치과<br>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br>5천원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br>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 <u>처방</u><br>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u>약국</u> , 동법<br>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br>처방, 조제( <u>의사</u> 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br>서 <u>약사</u> 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더하 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 여 드립니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 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을 통 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 여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외래에 대한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 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 를 계산합니다.
- 图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9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0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 제3장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해입원

① <u>회사는</u>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입원의료비</u>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u>수익자</u>의 고의. 다만, 그 <u>수익자</u>가 보험금의 일부 <u>수익자</u>인 경우에는 그 <u>수익자</u>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수익자</u>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의 고의
-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다만,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u>입원</u>한 경우. 그러나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정당한 이유없이 <u>입원</u>기간 중 <u>의사</u>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u>회사</u>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u>상해</u>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u>의료급여</u>법상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u>의료급여</u>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u>상해</u>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u>의사</u>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u>의료기관</u>에서 발생한 의료비

# (2) 상해통원

- $\boxed{1}$  <u>회사</u>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통원의료비</u>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u>수익자</u>의 고의. 다만, 그 <u>수익자</u>가 보험금의 일부 <u>수익자</u>인 경우에는 그 <u>수익자</u>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수익자</u>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의 고의
-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다만,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 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 (3) 질병입원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계약자의 고의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 입원한 경우(000~099)
- 4. 선천성 뇌질환(000~004)
- 5. 비만(E66)
-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184, K60~K62)
-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에 해당하 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상 <u>요양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u>의료급여</u>법상 <u>의료급여</u>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u>의료급여</u>관련 법령에 의해 <u>의료급여</u>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u>의료급여</u> 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u>회사</u>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 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u>의사</u>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 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u>의료기관</u>에서 발생 한 의료비

### (4) 질병통원

- ① <u>회사</u>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u>통원의료비</u>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u>수익자</u>의 고의. 다만, 그 <u>수익자</u>가 보험금의 일부 <u>수익자</u>인 경우에는 그 <u>수익자</u>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u>수익자</u>에게 지급합니다.
- 2. 계약자의 고의
-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 4.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정당한 이유없이 <u>통원</u>기간 중 <u>의사</u>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 <u>회사</u>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u>회사</u>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u>통원의료비</u>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 련 합병증(N96~N98)
  - 3.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000~099)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5. HIP+(E66)
-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 분(184, K60~K62)
-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 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 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 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 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 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 한 의료비

## (5) 종합입원형

- ① 상해에 대하여는 '(1) 상해입원형'을 적용합니다.
- 2 질병에 대하여는 '(2) 질병입원형'을 적용합니다.

### (6) 종합통원형

- ① 상해에 대하여는 '(3) 상해통원형'을 적용합니다.
- [2] 질병에 대하여는 '(4) 질병통원형'을 적용합니다.

# 제4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5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2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 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

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u>회사는 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u>계약의</u>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청약의 철회)

- ① <u>계약자</u>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u>계약</u> 또는 <u>보험기간</u>이 1년 미만인 <u>계약</u>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u>계약</u> (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u>보험기간</u>이 1년 이상인 <u>계약</u>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u>회사</u>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u>계약자</u>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u>계약의 보험계약</u>대출이율(이하 "보험<u>계약</u>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u>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u>계약</u>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u>회사</u>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u>계약자</u>는 <u>회사</u>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또는 담보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u>회사는</u> <u>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u>계약으로서</u>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u>회사</u>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u>회사는 계약자</u>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u>회사</u>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u>계약자</u>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u>회사</u>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u>계약자</u>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⑤ <u>계약자</u>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수익자</u>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 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 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8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u>계약</u>일 현재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 【계약해당일】

친추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1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 제9조(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0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 |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 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 제5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 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1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 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 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대신합니다.

#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 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 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자</u>가 <u>계약</u>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u>회사</u>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u>회사</u>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u>회사</u>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u>회사</u>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u>계약자</u>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u>계약자</u>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u>회사</u>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u>계약</u>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u>계약자</u>에게 지급합니다.

#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 따라 <u>계약</u>이 해지되었으나 <u>계약자</u>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u>계약</u>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u>계약자</u>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u>회사</u>가 정한 절차에 따라 <u>계약</u>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u>회사</u>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u>회사</u>가 정하는 이율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u>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5조(계약</u>의 성립),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u>회사</u>의 보장개시), 제22조(<u>계약</u> 전 알릴의무) 및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2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u>계약</u>의 경우 <u>계약자</u>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u>계약</u>이 해지된 경우에는, <u>회사</u>는 해지 당시의 <u>수익자</u>가 <u>계약자</u>의 동의를 얻어 <u>계약</u> 해지로 <u>회사</u>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u>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u>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u>계약자</u> 명의를 <u>수익자</u>로 변경하여 <u>계약</u>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u>회사</u>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u>수익자</u>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u>회사</u>는 법정상속인이 <u>수익자</u>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u>계약자</u>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u>회사</u>는 제1항의 통지를 <u>계약</u>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u>회사</u>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5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 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궈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 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18조(해지환급금)

[]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 CŁ.

# 제1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6장 다수보험의 처리 등

# 제20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다수보험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 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 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간 계약별 부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21조(연대책임)

1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 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청구권 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7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 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 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라

- 며,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u>계</u>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집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u>회사</u>의 청구에 대해 <u>계약자</u>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u>회사</u>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u>회사</u>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u>회사</u>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지급합니다.

###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2조(<u>계약</u>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3조(<u>상해보험계약</u> 후 알릴 의무)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회사</u>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u>회사</u>가 <u>계약</u>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u>회사</u>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u>계약</u>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u>회사</u>가 이 <u>계약의 청약시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u>계</u>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u>

-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5. 보험설계사 등이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u>계약자</u> 또는 <u>피보험자(보험대상</u> <u>자)</u>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u>계약을</u>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u>회사</u>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수익자</u>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 드립니다.
- 6 <u>회사</u>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u>계약</u>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u>회사</u>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수익자</u>가 <u>회사</u>에게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u>상해</u> 또는 질병 을 발생시킨 경우
  - 2.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수익자</u>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② <u>회사</u>가 제1항에 따라 <u>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u>는 그 취지를 <u>계약자</u>에게 통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 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8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 제27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 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 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 제28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 로 합니다.
-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 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 양식)
-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 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이어야 합니다.

#### 제31조(보험금의 지급)

- □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 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 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LICt.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4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제24조(알릴의무 위반의 효 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u>회사</u>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32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 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② <u>회사</u>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u>계약자</u> 또는 <u>수익자</u>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u>회사</u>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자</u> 또는 <u>수익자</u>에게 알린 경우의 중도 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 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 2. 중도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 의 기간중 <u>보험기간</u>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u>보험기 간</u>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리연동형의 경우 "예정이율"을 "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u>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u>)는 <u>회사</u>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u>회사</u>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 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u>회사</u>는 <u>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u> 각 호의 사항을 <u>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u>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수 있으며, 이 경우 <u>회사</u>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동의), 제25(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제35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u>회사</u>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 성보형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u>계약자</u>는 제1항에 의한 보험<u>계약</u>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회사</u>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u>계약</u>의 해지)에 따라 <u>계약</u>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9장 분쟁조정 등

# 제3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u>회사</u>는 <u>계약자</u>가 청약한 경우 <u>계약자</u>에게 약관 및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 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 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 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 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 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 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의한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5]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어 있는 경 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약관의 해석)

-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 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
-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수익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제10장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제46조(특별약관 소멸에 따른 준비금의 정산)

제10조(계약의 소멸)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계 약이 소멸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7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4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8조(만

# <붙임> 용어의 정의

| 용 어   | 정 의  |
|---|--|
| 계약  | 보험계약   |
| <u>계약자</u>                                      | 보험 <u>회사</u> 와 <u>계약</u> 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u>피보험자</u>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   |
| (보험대상자)   | 는 사람   |
| <u>수익자</u>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 <u> 보험기간</u>                                    | <u>계약</u> 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
| <u>회사</u>                                       | 보험 <u>회사</u>   |
| <u>    상해</u>                                   | <u>보험기간</u>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u>상해보험계약</u>                                   | <u>상해</u> 를 보장하는 <u>계약</u>   |
| <u>의사</u>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u>의사</u> , 한 <u>의사</u> 및 치과 <u>의</u><br><u>사</u> 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약사  | <u>약사</u> 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u>약사</u> 및 한 <u>약사</u> 의 자격을<br>가진 사람  |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u>의료기관</u> ) 제2항에서 정하는 <u>의료기관</u> 이며<br>종합 <u>병원 병원 치과병원</u> 한방 <u>병원</u> 요양 <u>병원</u> 의원 치과<br>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
| <u>약국</u>                                       |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u>의</u> 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 <u>병원</u>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u>병</u><br><u>원</u>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
| <u>입원</u>                                       |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u>상해</u> 로 인하여 치료가<br>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br>여 <u>병원</u> ,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br>기관에 입실하여 <u>의사</u> 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br>것          |
| <u>입원</u> 의 정의<br>중 이와<br>동등하다고<br>인정되는<br>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 <u>의료기관</u> ) 제2항에서 정한 <u>의료기관</u> 에 준하는 <u>의료기관으로</u> 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u>의료기관</u> 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 용 어          | 정 의  |
|--------------|--|
| <u>기준병실</u>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u>입원</u> 시 적용하는 기준이되는 병실  |
| <u>입원실료</u>  | 입원치료 중 발생한 <u>기준병실</u>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br>등을 말함   |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br>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br>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br>함   |
| <u>입원수술비</u>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br>말함  |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u>입원제비용</u> , <u>입원수술비</u> ,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
| <u>통원</u>    | 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u>상해</u> 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u>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u> 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 <u>처방조제</u>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u>상해</u> 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u>통원</u> 으로 인하여 발행된 <u>의사</u> 의 처방전으로 <u>약국의 약사</u> 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u>처방조제</u>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u>약사</u> 의 직접조제 포함) |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br>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br>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br>함   |
| 외래수술비        | <u>통원</u> 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br>말함  |
| 처방조제비        | 병원 <u>의사</u> 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u>약국</u> 의 <u>처방조제비</u><br>및 <u>약사</u> 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

| 용 어                                       | 정 의  |
|---|--|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u>요양급여</u> )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u>요양급여</u> 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u>입원</u> 6. 간호 7. 이송   |
| 국민건강보험<br>법상<br>본인부담금<br>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 상 <u>요양급여</u>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br>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br>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br>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br>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u>회사</u> 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 <u>보상대상의료</u><br>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u>회사</u> 부담비율  |
| <u>다수보험</u>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u>상해</u> ·질병<br>·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br>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br>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u>계약</u> 이 동일<br>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u>계약</u> 별 <u>보상책임액</u> 이 있는 다<br>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한 가입자<br>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br>여를 말함<br>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br>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br>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 의료급여법상<br>본인부담금<br>보상제 및<br>본인 부담금<br>상한제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 2. 해외치료입원의료비 【갱신계약】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해외치료입원의료비 【갱신형】특별약관은 사람의 질병 또는 <u>상해</u>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합니다)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제1장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내에서 입은 <u>상해</u>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u>해외의료기관에 입원</u>하여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u>상해</u>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해외의료기관이라 함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 (부황,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u>상해</u> 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u>상해</u>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①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u>계약</u>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⑤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u>입원</u>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

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 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 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 니다.
- 图 동일한 질병이라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 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 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 9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제9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11 이 특별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의 고의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 르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 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000~099)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5. 비만(E66)
-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184, K60~K62)
- 4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질병의 경우 치과치료,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u>상해</u>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드립니다.
- 4.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검열반 등 안과질환
-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8.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3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3조(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u>회사는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가 <u>계약</u>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u>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4조(청약의 철회)

- ① <u>계약자</u>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u>계약</u> 또는 <u>보험기간</u>이 1년 미만인 <u>계약</u>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u>계약</u> (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u>보험기간</u>이 1년 이상인 <u>계약</u>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u>계약자</u>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u>회사</u>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u>계약자</u>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u>계약</u>의 보험<u>계약</u>대출이율(이하 "보험<u>계약</u>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u>계약자</u>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u>계약</u>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u>회사</u>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계약자</u>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1. 보험종목 또는 담보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4]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 면 변경후 수익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5] 계약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 야 합니다.

#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 |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 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나이 등)

- []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Γŀ
-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 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1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 제7조(계약의 무효)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8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u>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u>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u>계약자</u>에게 지급합니다.

#### 제4장 보험료의 납입 등

###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u>회사</u>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u>회사</u>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u>회사</u>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u>회사</u>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3. 진단<u>계약</u>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

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u>회사는 계약자</u>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u>회사</u>(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u>회사</u>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u>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u>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u>계약</u>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u>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u>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u>계약자</u>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u>회사</u>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 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자</u>가 <u>계약</u>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u>회사</u>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u>회사</u>는 14일(<u>보험기간</u>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 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 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 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 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에 이 보험의 예정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종 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3조(계약의 성 립),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0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0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 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수익자가 제1항에 의 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5]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진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 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 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16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u>계약</u>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u>회사</u>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u>계약자</u>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1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5장 다수보험의 처리 등

#### 제18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u>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u> 및 <u>다수보험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u>단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u>계약의 보상책임액</u> 합계액은 각 <u>계약의 보상대상</u>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각 <u>계약의 보상책임액</u> 합계액이 각 <u>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u> 중 최고액을 초 과한 <u>다수보험</u>은 각 <u>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u>다수보험</u>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u>입원</u>, 외래, <u>처방조제</u>를 각 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u>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u>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u> 중 최고액 × <u>각 계약별 보상책임액</u> 각 <u>계약</u>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19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u>수익자</u>가 동일한 <u>다수보험</u>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u>회사</u> 중 한 <u>회사</u>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u>회사</u>는 해당 보험금을 이 <u>계약</u>의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u>회사는 수익자</u>가 다른 <u>회사</u>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u>회사</u>가 보상한 금액이 <u>수익자</u>가다른 <u>회사</u>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u>수익자</u>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6장 계약 전 알릴의무 등

####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는 청약시(진단<u>계약</u>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사실대로 알려야(이하 "<u>계약</u>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u>계약</u>의 경우 <u>의료기관</u>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u>회사</u>의 청구에 대해 <u>계약자</u>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u>회사</u>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u>계약자</u> 또는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u>회사</u>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u>회사</u>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u>계약자</u> 또는 <u>미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2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u>회사</u>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 과실로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 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1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증

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 드립니다.

6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에게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 을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2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 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7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 제25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 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 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 제26조(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 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 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2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 양식)
- 2.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의 진단서 등
- 3. 해외의료기관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진단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이어야 합니 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
- 로 나누어집니다.

## 제29조(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 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 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 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 LIL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4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는 제22조(알릴의무 위반의 효 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30조(환급금의 지급)

[]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 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LICt.

[2] 회사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근한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중도 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 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 2. 중도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 의 기간중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보험기 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 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리연동형의 경우 "예정이율"을 "공시 ()|윸"로 적용합니다

#### 제3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 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 액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 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 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 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 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제33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 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과 보 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4 회사는 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8장 분쟁조정 등

## 제3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 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 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는 방법. 이 경우 <u>계약자</u>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u>계약자</u>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u>계약을</u> 체결할 때 <u>계약자</u>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u>계약자</u>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u>계약</u>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u>계약</u>의 경우에는 <u>계약</u>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u>계약</u>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u>계약자</u>에게 드림으로써 <u>계약자</u>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2항에 따라 <u>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u>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동일하고 <u>수익자</u>가 <u>계약자</u>의 법정상속 인인 계약일 경우

⑤ <u>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u>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로 되어 있는 경 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36조(분쟁의 조정)

<u>계약</u>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u>회</u>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약관의 해석)

- ① <u>회사</u>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u>계약자</u>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u>회사</u>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계약자</u>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 ③ <u>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u>에게 불리하 게나 부당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u>회사</u> 제작의 보험안내장(<u>계약</u>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u>회사는</u> <u>계약</u>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및 <u>수익자</u>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등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2 <u>회사</u>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u>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u> 또는 <u>수익자</u>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u>회사</u>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u>계약자</u>, <u>피보험자(보험대상</u> <u>자)</u> 또는 <u>수익자</u>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boxed{1}$  <u>회사</u>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u>계약자</u>는 <u>계약</u>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u>계약</u>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u>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계약</u>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u>회사</u>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제9장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제44조(특별약관 소멸에 따른 준비금의 정산)

제8조(계약의 소멸)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 이 소멸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5조(특별약관의 갱신)

- [1]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46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4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제18조(만 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 <붙임>용어의 정의

| 용 어  | 정 의  |
|--|--|
| <u>용                                    </u> | 보험계약   |
|  | <u></u>  |
| <u>계약자</u>                                   | 보험 <u>회사와 계약을</u>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u> </u>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   |
| (보험대상자)                                      | 는 사람   |
| <u>수익자</u>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 <u> 보험기간</u>                                 | <u>계약</u> 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
| <u>회사</u>                                    | 보험 <u>회사</u>   |
| <u>상해</u>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u>의료기관</u> 이며<br>종합 <u>병원 병원 치과병원</u> 한방 <u>병원 요양병원</u> 의원 치과<br>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   |
| 해외의료기관                                       | 해외소재 의료기관  |
| <u>병원</u>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u>병</u><br><u>원</u>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
| <u>입원</u>                                    |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u>상해</u> 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br>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u>병</u><br>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u>의료기관</u> 에<br>입실하여 <u>의사</u> 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
| 보상대상의라기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회사부담비율   |
| <u> </u>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u>상해</u> ·질병<br>·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br>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br>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br>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br>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 운전자관련관련 특별약관

1. 자동차사고성형비용(자가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이하 『자동차사고』라합니다)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성형비용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같은 사고로 제1항에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 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 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인한니다

##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 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 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 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 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 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 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 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 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의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 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 사고 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제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인한니다

3. 자동차사고 벌금(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 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 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 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 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4.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영업용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 우에는 면허정지기간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면허정지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보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 정지기간을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 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 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 받지 못하여 면허정 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의 운전면허정지보장은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지급하 여 드립니다.
- 4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 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 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5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 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5. 운전면허취소보장(영업용) 특별약관【갱신계약】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운전면허취소보장 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 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영업용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면허취소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 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 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 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제1항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입합니다.

## 6.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1】(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②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  |
|-------------|--------------|------------|--|--|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 ③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6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7]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8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 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자가용운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 6. 계약자의 고의

##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보장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 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 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 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1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별표1】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1급       | 1.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글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몸 표면의의 기계선트 이상의 상해)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
| 2급       | <ol> <li>상박골 분쇄성 골절</li> <li>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li> <li>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li> </ol>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2급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의 전체에 퍼져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상해<br>급별 | 상 해 내 용   |
|----------|---|
| 3급       | <ul> <li>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li> <li>15. 경추궁의 선상 골절</li> <li>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li> <li>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상해</li> <li>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li> </ul> |

#### 【별표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2항 단서

-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 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 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 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 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 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 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 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 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 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3항에 따른 어 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상기 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7.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 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 다.)에게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 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1】(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 [2] 제1항의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 로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 참 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 니합니다.
- 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5]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6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7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 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를 말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 무면 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자가용운전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미수 포함)
- 6. 계약자의 고의

##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중상해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 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 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역사와이그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5조(특별약관의 갱신)

-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II)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별표1】(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별표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 8.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보장 특별약관 【갱신계약】
  -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보장으로 치아 1개당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교통사고"라 합니다)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 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4.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중 5급 16항, 6급 17항, 7급 10항, 8급 15항, 9급 16항, 10급 7항, 11 급 8항, 12급 3항, 13급 3항, 14급 3항에 해당되어 【별표】(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 트 등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1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외합니다.

##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상해급별   | 상 해 내 용                        |
|--------|--------------------------------|
| 5급 16항 |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급 17항 |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 7급 10항 |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 8급 15항 |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9급 16항 |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급 7항 |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1급 8항 |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 12급 3항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3급 3항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4급 3항 |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9. 자동차사고부상보장(자가용/영업용) 【갱신계약】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 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부상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  |
|----------|-----------------|---------|--|--|
| 1급       | 부상등급 I          | 600만원   |  |  |
| 2 ~ 3급   | 보험가입금액300만원기준   | 300만원   |  |  |
| 4급       |                 | 300만원   |  |  |
| 5급       |                 | 150만원   |  |  |
| 6급       | 부상등급Ⅱ           | 80만원    |  |  |
| 7급       |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40만원    |  |  |
| 8 ~ 11급  |                 | 20만원    |  |  |
| 12 ~ 14급 |                 | 10만원    |  |  |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 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4.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 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정한 사항
- 2.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은 제도성 특별약관 10. 보장특약 자동갱신 (11)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해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 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0조(중도인출)는 제 인한니다

#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비운전자자동차사고부상보장 특별약관의 별표와 동일

#### 제도성특별약관

#### 1.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 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제3조(부양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및 제4조(태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에 시작하여 제5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한 기간까 지 적용됩니다.
- ③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될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출생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2] 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부양자관련 특별약관』중 적어도 하나의 특별약관이 부가 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부양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부양자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에 시작하며, 계약일로부터 태아가 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 제4조(태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태아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 제5조(출생통지)

- ①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2.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2 회사는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유산 또는 사산 등)

- [1]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다 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양자인 『부양자관련 특별약관』은 제외합니 다)을 무효로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통지서(회사양식)
-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4. 최종보험료 영수증
- ③ 회사는 제2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 다.(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양자인 『부양자관련 특별약관』은 제 외합니다)

#### 제7조(복수출생의 경우)

- II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 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1인을 새로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새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
  -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4 제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

- 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때부터 변경후의 피 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5]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하여 드립니
- 6 제2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7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제2 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을 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나이)

보통약관 제8조(보험나이 등)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 제9조(보험나이 계산 및 특례)

계약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는 0세로 합니다.

### 제10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태아일 경우의 보험료는 피보험자(보 현대상자)남자 0세 보장보험료(일시납으로 가입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이 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과 여자 0세 보장보험료(일시남으로 가입하는 특별 약관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 용하며, 출생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이 변경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또한 산모의 출산 예정일과 실제출산일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보험료정산을 포함합니다.
- 2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4]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에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

### 제1조(보통약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이외에 본인의 형제자 매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 망한 경우에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 Cł.

### 3. 부양자추가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부양자관련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양자(이하 『주된 부양자』이라 합니 다)이외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양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 Cł.
- ② 제 1항에 따라 주된 부양자 이외의 부양자가 추가할 수 있는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부양자질병사망용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 ② 부양자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연금 특별약관
  - ③ 유자녀교육자금 I (질병사망/고도후유) 특별약관
  - ④ 유자녀교육자금 ((상해사망/고도후유) 특별약관

##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 망한 경우에 계약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 Γŀ

## 4.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 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4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 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 는 정격 출력이 0.59kW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 Γŀ

##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5.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 ① 계약자와 동일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서만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 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 전까지로 합니다.

#### 제2조(지급사유)

- [1]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 결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 급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 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 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4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5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생 존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6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 []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계약자가 미리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 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가 제7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이내의 친족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 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조 (지급사유)의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구 인이 청구할 경우)
- 7. 기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 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 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보장특별약관을 따릅 LIL

## 6. 특정부위 및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 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통약관(이하 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4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 효로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 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 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 헌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 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 면책(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 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 병이 발생한 경우

## 제2조(특별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조건의 내용)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별표1] (특정부위 질병 분류표)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 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별표 1-1】(특정부위 분류표))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 (【별표1-2】(특정 질병 분류표))

2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 로 적용한 경우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 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 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이 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 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7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을 합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특정부위 질병 분류표

### 【별표1-1】특정부위분류표

| 코드 | 특 정 부 위                                 |  |  |  |  |
|----|---|--|--|--|--|
| 1  |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  |  |  |  |
| 2  |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  |  |  |  |
| 3  | 직장 또는 항문                                |  |  |  |  |
| 4  | 간장, 담낭 또는 담관                            |  |  |  |  |
| 5  | 췌장                                      |  |  |  |  |
| 6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  |  |  |  |
| 7  | 코 (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  |  |  |  |
| 8  | 인두 또는 후두                                |  |  |  |  |
| 9  |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귀밑샘) 또는 설하선         |  |  |  |  |
| 10 | 귀 (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 귀), 내이(속귀), 청신경 |  |  |  |  |
|    | 및 유양돌기 포함)                              |  |  |  |  |
| 11 |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  |  |  |  |
|    | 조직 포함)                                  |  |  |  |  |
| 12 | 신장                                      |  |  |  |  |
| 13 | 요관, 방광 또는 요도                            |  |  |  |  |
|    | 전립선                                     |  |  |  |  |
| 15 | 유방(유선 포함)                               |  |  |  |  |
| 16 | 자궁(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  |  |  |  |
| 17 | 난소 또는 난관                                |  |  |  |  |
| 18 | 고환(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  |  |  |  |
| 19 | 갑상선                                     |  |  |  |  |
| 20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  |  |  |
| 21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  |  |  |
| 22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  |  |  |
| 23 | 천골(선골)부 또는 미골부(해당신경 포함)                 |  |  |  |  |
| 24 | 좌견관절부                                   |  |  |  |  |
| 25 | 우견관절부                                   |  |  |  |  |

| 코드 | 특 정 부 위                          |  |  |  |  |  |
|----|----------------------------------|--|--|--|--|--|
| 26 | 좌고관절부                            |  |  |  |  |  |
| 27 | 우고관절부                            |  |  |  |  |  |
| 28 | 좌상지(좌견관절부 제외)                    |  |  |  |  |  |
| 29 | 우상지(우견관절부 제외)                    |  |  |  |  |  |
| 30 |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  |  |  |  |  |
| 31 |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  |  |  |  |  |
| 32 | 자궁체부(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  |  |  |
| 33 | 서혜부(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가 |  |  |  |  |  |
|    | 생긴 경우에 한함)                       |  |  |  |  |  |
| 34 | 식도                               |  |  |  |  |  |
| 35 | 대장(맹장 및 직장 제외)                   |  |  |  |  |  |
| 36 | 피부(두피 및 입술포함)                    |  |  |  |  |  |
| 39 | 상 하악골(上 下顎骨, 위이래턱뼈)              |  |  |  |  |  |
| 48 | 좌수부(左手部)                         |  |  |  |  |  |
| 49 | 우수부(右手部)                         |  |  |  |  |  |
| 50 | 좌족부(左足部)                         |  |  |  |  |  |
| 51 | 우족부(右足部)                         |  |  |  |  |  |
| 52 | 부갑상선                             |  |  |  |  |  |

# 【별표1-2】특정질병분류표

| 코드 | 특정<br>질병 | 분류<br>코드    | 항 목 명                         |  |  |
|----|----------|-------------|-------------------------------|--|--|
| 40 | 담석증      | K80         | <b></b> 당석증                   |  |  |
|    |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  |
| 41 | 요로       | N21         | 하부 요로의 결석                     |  |  |
| 41 | 결석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  |
|    |          | N23         |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  |
|    |          | <b>M4</b> 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    |          | M41         | 척주측만증                         |  |  |
|    |          | M42         | 척추 골연골증                       |  |  |
|    | 척추<br>질환 | <b>M43</b>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  |
|    |          | <b>M</b> 45 | 강직성 척추염                       |  |  |
|    |          | <b>M4</b> 6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  |
| 42 |          | M47         | 척추증                           |  |  |
|    |          | <b>M4</b> 8 | 기타 척추병증                       |  |  |
|    |          | <b>M4</b> 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  |
|    |          | M50         | 경추간판 장애                       |  |  |
|    |          | M51         | 기타 추간판 장애                     |  |  |
|    |          | M5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  |
|    |          | M54         | 등통증                           |  |  |
|    | 결핵       | A1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  |  |
| 40 |          | A16         |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  |  |
| 43 |          | A17         | 신경계통의 결핵                      |  |  |
|    |          | A18         | 기타 기관의 결핵                     |  |  |
|    |          | A19         | 좁쌀 결핵                         |  |  |

| 코드 | 특정  | 분류  | 항 목 명                            |
|----|-----|-----|----------------------------------|
|    | 질병  | 코드  | 0.10                             |
| 53 | 하지  | 183 | 하지의 정맥류                          |
|    | 정맥류 |     |                                  |
| 54 | 골반염 | N73 | 기타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
|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
|    |     | MOO | 화농성관절염                           |
|    |     | MO1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감염 |
|    |     | MO2 | 반응성 관절병증                         |
|    |     | M0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br>병증  |
|    |     | M05 |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    |     | M06 |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
|    |     | M07 | 건전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
|    | 연골증 | M08 | 연소성 관절염                          |
|    |     | M09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
| 55 | 관절증 | M10 | 통풍                               |
|    |     | M11 | 기타 결정관절병증                        |
|    | 관절염 | M12 | 기타 특이성 관절병증                      |
|    |     | M13 | 기타 관절염                           |
|    |     | M14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
|    |     | M15 | 다발관절증                            |
|    |     | M16 | 고관절증                             |
|    |     | M17 | 무릎 관절증                           |
|    |     | M18 |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    |     | M19 | 기타 관절증                           |
|    |     | M93 | 기타 골연골병증                         |
|    |     | M94 | 연골의 기타장애                         |

#### 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7-1.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8.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합니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 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 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 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 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 정을 ([[라]

#### 9.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제2조(보험기간 연장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 고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방 법서 별지에서 정한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의 보험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기간 연장 안내)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에 관 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험기간 연장 대상자)

보험기간 연장 대상자는 기본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추가 특별약관에 의해 추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포함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부양자의 경우는 보험기간 연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서 제 외합니다.

### 제4조(보험기간 연장의 체결)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및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 우 보험기간 연장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제5조(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4조(보험기간 연장의 체결)에 의해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 입하여야 합니다.

## 제6조(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약관의 준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10. 보장특약 자동갱신(Ⅱ) 특별약관

# 제1조(특약의 적용)

이 보장특약 자동갱신(II)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손해의 보

상을 내용으로 한 이 계약의 특별약관(이하 『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자 동갱신에 대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사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

[1] 이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갱신종료 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남은 기 간이 갱신전 보험기간보다 작을 경우(가령 갱신전 보험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나이를 말 합니다)까지의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을 보험기간으 로 합니다.

< 예시 : 8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11세, 14세 ~ 72세. 75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3년보다 작아 3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2 이 보장특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는 보장특약의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에는 종전의 보장특약(이하 『갱신전 보장특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 으로 보장특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1. 갱신된 특별약관(이하 『갱신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 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령이 회사가 정한 연령의 범 위 내일 것
- 3. 갱신전 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 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적용 합니다.
-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치상실보장 특별약관. 치아부정교합치료비 특별 약관, 시력교정비 특별약관, 시력치료비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보험계약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세(영구치상실보장 특별약관의 경우 1 세 또는 4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은 1년으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가 2세인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치보존치료보장 특별약관. 영구치보존치료보장 특 별약관, 치아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보험계약일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세(영구치보존치료보장 특별약관. 치아보철치료보장 특별약관의 경우 1세 또는 4세)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세인 경우 최초계약의 보 헝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 제3조(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 우 최초 계약시의 보험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 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보험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 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제도 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에서 정한 갱신제한 사유 및 제1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 전 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 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 예시 : 10세의 피보험자가 3년만기로 갱신하는 경우>

아래 예시에서 최초 계약시 납입할 특약보험료는 가입시점의 10세 보험료 인 5.000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특약보험료는 가입 3년후 새롭 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10세 → 13 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하분이 함께 반영 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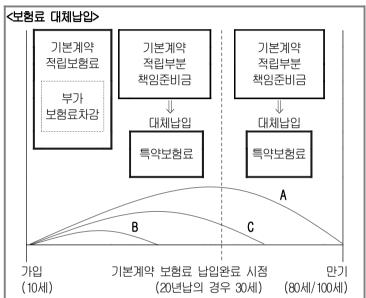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특약보험료는 가입 9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 표를 적용받는데. 우선 피보험자의 나이증가(16세 → 19세)로 인한 보험료 의 증가분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 구 분               | 10세    | 13세    | 16세    | 19세     |   | 비고            |
|-------------------|--------|--------|--------|---------|---|---------------|
| 특약보험료             | 5,000원 | 6,200원 | 7,600원 | 12,500원 |   |               |
| 최초계약<br>보험료표      | 5,000원 | 6,500원 | 8,000원 | 10,000원 |   |               |
| 첫 번째 갱신계약<br>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나이증가<br>위험률인하 |
| 두 번째 갱신계약<br>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나이증가          |
| 세 번째 갱신계약<br>보험료표 | 6,300원 | 8,000원 | 9,900원 | 12,500원 |   | 나이증가<br>위험률상승 |
| :                 | :      | :      | :      | :       | : |               |

## 제4조(보험료의 납입)

- [T] OI 특별약관에 의해 적용되는 【갱신계약】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 및 제 2회 이후의 보험료(이하 『특약보험료』라 합니다)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됩니 Cł.
- 2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특약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기 본계약의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 야 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해당 특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해당 특 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

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특약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지급 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 A. B. C는 특약보험료를 대체납입한 후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곡선임.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은 대체납입 대상 특별약관 보험료의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대체납입 대상 특별약관의 전 보 험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납입될 수 있도록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를 충 분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위 그림의 A)

그러나 보험기간 중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 본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면 적립부분의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적립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위 그림의 B).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더라 도 해당 특약의 보장보험료는 보험기간 동안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위 그림의 C)

#### 제5조(갱신보장특약의 보장개시)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보장 특약의 보장개시는 갱신일 당일로 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보장특약을 따릅니다.

#### 11. 실손의료비 보장(적립대체형) 무사고할인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2011년 4월 1일 이후 갱신이 도래하는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 제2조(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

① 회사는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이 일정기간(이하 「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경우 「할인적용기간」 동안 매회 대체납입할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한보장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은 매 갱신시마다 재산정합니다.

## <보험료 할인대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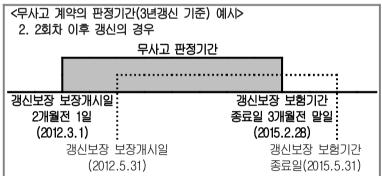
|    | 구 분   | 판정기간내<br>보험금 지급여부 | 갱신전후<br>동일보장내용여부 | 갱신보험료<br>할인여부 |
|----|-------|-------------------|------------------|---------------|
| 상해 | 입원의료비 | _                 | 딩                | 할인            |
|    | 통원의료비 | 지급                | _                | Χ             |
| 질병 | 입원의료비 | -                 | -                | Х             |
|    | 통원의료비 | 지급                | 동일               | Х             |

주) 통원의료비의 경우, 통원치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보장내용이 구분된 경우 각각 적용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도 같습니다.

② 제1항의 「무사고 판정기간」이라 함은 갱신보장 보장개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전 1일부터 갱신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갱신의 경우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

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할인적용기간」은 갱신된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할인적용기간」 내에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되는 날에 할인적용도 종료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인금액(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장보험료의 10% 합계액)이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할인금액을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12. 전자서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 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 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 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 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 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 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 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 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 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 Γ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고객콜센터 1544-0114